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김동훈 · 이정민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김동훈 · 이정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동훈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이정민 | 부연구위원 | 제2, 3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P2025-01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5. 10.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 | 979-11-6149-814-0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단순한 ‘애완의 대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 개선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반려묘를 대상으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10여 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 수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약 11만 마리 수준의 유실·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부 정책 추진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등록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관련 인식과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등록 저해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반려동물 소유자분들과 깊이 있는 고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반려동물의 등록률 향상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25.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연구 목적

-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려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률 제고 문제는 여전히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의 현황과 등록 실태 및 활성화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해외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동물등록 의무화 대상인 반려견과 동물등록 시범사업 대상인 반려묘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동물등록제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와 관련 법 및 정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동물등록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등록 실

태를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동물등록제 관련 항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뿐만 아니라 문현 및 해외 자료 검토를 통해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정책 동향과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학계, 산업계, 수의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관련 정보 및 의견수렴 결과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연구 결과

-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동물등록제는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여러 조항을 통해 등록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국내 반려동물 등록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추진된 다양한 동물복지 관련 정책 내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제시·변화되어 왔다. 특히, 2025년 2월에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등록대상 및 범위 확대, 등록방식 개선, 등록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
-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을 통해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반려견의 등록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표본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정확한 등록률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 등록방식 일원화, 신규 등록방식 도입 검토 등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 및 등록대상 관련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동물등록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검토한 결과 동물등록 대상 및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동물등록 방식 일원화와 함께 체계적인 등록 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및 보유세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판매단계에서 동물등록 규정에 대한 준수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제언

-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 및 관련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개체 수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정보 변경에 따른 최신 정보가 파악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려동물의 등록률 향상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기반으로 국내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의 기본방향을 ①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② 반려동물 등록 정보 관리체계 강화, ③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로 구분하였으며, 각 기본방향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먼저,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① 등록대상 및 범위 확대, ② 등록 절차 간소화 및 변경 신고 실효성 제고, ③ 법적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 향상 및 단속·처벌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 정보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① 동물등록 방식 일원화 추진 및 신규 등록방식 검토, ②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 검토, ③ 등록 정보 관리 플랫폼의 활용성 강화, ④ 등록 정보 관리 전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① 전국 단위 홍보 및 캠페인 강화, ②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③ 취약계층 대상 등록비용 지원 확대, ④ 등록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였다.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System

Purpose of Research

- In Korea,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raising companion animals—particularly dogs and cats—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social demand for improved companion animal welfare. In particular, since 2014, a mandatory dog registr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to prevent the loss and abandonment of animals and to strengthen owners' sense of responsibility. However, increasing the registration rate remains a critical challenge for improving companion animal welfare, underscoring the need to explore effective measures to address this issu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tasks for revitalizing Korea's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system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the actual conditions of registration, and the factors hindering its activation—focusing on dogs and cats—against the backdrop of an increasing number of companion animal households. This study also reviews major international cases to support these proposals.

Research Method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companion dogs, which are subject to mandatory registration, and companion cats, which are included in pilot registration programs, as its research subjects. First, a thorough review was conducted of numerous previous studies, relevant laws, and policy documents related to the animal registration system. Additionally, statistical data on animal registration were collected from relevant institutions and analyzed.
-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companion animal owner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animal registra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including perceptions of various aspects of the registration system—were analyzed, and key implications were derived.
- Furthermore, through a review of literature and international sources, major policy trends and cases related to animal registration in key countries—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were examined, 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expert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with professionals across various fields, including academia, industry, and veterinary medicine, and the information and feedback collected through these consultations were incorporated into the study's results.

Main Findings

- The animal registration system is a scheme in which ‘animals subject to registration’ must be registered with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the loss or abandonment of animals and to strengthen owners’ sense of responsibility. The animal registration system is implemented based on the 「Animal Protection Act」, enacted in 1991, and its registration-related provisions are stipulated across several articles of the Act.
- Policies related to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in Korea have been presented and developed as one of the key components for enhancing animal welfare within the broader range of animal welfare policies implemented to date. “In particular, the ‘Third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Plan (2025–2029)’, announced in February 2025, proposed expanding the scope and categories of animals subject to registration, improving registration methods, and strengthening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s. In addition, various support programs are being implemented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system.
- Although the registration rate of companion dogs subject to mandatory registration has continued to rise as a result of these government policies, the figures are based on limited sample surveys,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precise registration rate. In

addition, ongoing discussions are being held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including mandating registration for companion cats, standardizing registration methods, and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new registration approaches.

- Based on the survey results from companion animal owner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egistration rate and strengthen regulations regarding animals subject to registration. Second, measures to improve the methods of animal registration should be developed. Third,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strengthen public outreach are required. Fourth, awareness of registration-related regulations must be improved, accompanied by stronger enforcement.
- An examination of animal registration laws and policies in major countries—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revealed that the scope and categories of animals subject to registration are gradually expanding, and that systematic management of registration information is being implemented alongside the standardization of registration methods. “In addition, various incentives are being provided to increase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rates, and animal welfar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 connection with registration fees and companion animal ownership taxes. Furthermore, compliance with animal registration requirements

appears to be strictly enforced at the point of sale of companion animals.

Policy Suggestions

- For the improvement of companion animal welfare, it is essential to obtain up-to-date information on both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which can be considered the direct beneficiaries of welfare policies—and any changes in the information of owners and their animals. Enhancing the registration rate serves as the most fundamental basis for achieving this.
- Accordingly,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study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ree fundamental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1)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system, (2) enhancing the management system for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3) improving owner awareness and expanding support. Improvement tasks corresponding to each of these directions were then derived and presented.
- First,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system, the following improvement tasks were proposed: (1) expanding the scope and categories of animals subject to

registration, (2) simplifying registration procedure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 changes, and (3) increasing awareness of legal requirements and strengthening enforcement and penalties. In addition,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system for companion animal registration inform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 tasks were proposed: (1) promoting the unification of registration methods and reviewing new registration approaches, (2)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registration renewal system, (3) enhancing the usability of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platform, and (4) securing dedicated personnel for regist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their expertise. Lastly, to improve owner awareness and strengthen support, the following improvement tasks were proposed: (1) enhancing nationwide publicity and campaigns, (2) promoting mandatory pre-adoption education for prospective owners, (3) expanding financial support for registration costs for vulnerable groups, and (4) providing differentiated incentives for registered animals.

Researchers: KIM Donghoon, LEE Jungmin

Research period: 2025. 5. - 2025. 10.

E-mail address: donghoon@krei.re.kr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3. 연구 내용 및 방법	10
4. 연구추진체계	12

제2장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및 정책 현황

1.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13
2.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32

제3장 반려동물 등록 관련 현황

1. 반려동물 등록 현황	61
2.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현황	72

제4장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81
2. 조사 결과	82
3. 시사점	115

제5장 해외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시사점

1. 미국	121
2. 영국	128

3. 독일	129
4. 일본	132
5. 시사점	134

제6장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

1.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의 기본방향	137
2.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139

부록

1.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표	151
2. 미국의 주별 동물등록 관련 요건	161

참고문헌

167

제1장

〈표 1-1〉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추이	1
〈표 1-2〉 동물복지 요소 강화의 필요성	2
〈표 1-3〉 국내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주요 정책	3
〈표 1-4〉 연도별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4
〈표 1-5〉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4

제2장

〈표 2-1〉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관련 주요 조항	15
〈표 2-2〉 동물등록 방식 비교	30
〈표 2-3〉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31
〈표 2-4〉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35
〈표 2-5〉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37
〈표 2-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42
〈표 2-7〉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45
〈표 2-8〉 「동물복지 강화방안」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46
〈표 2-9〉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49
〈표 2-10〉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추진계획	50
〈표 2-11〉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관련 주요 사례	54
〈표 2-12〉 반려동물 생체정보 기술 활용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현황	57

제3장

〈표 3-1〉 연도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	63
------------------------	----

〈표 3-2〉 지역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2024)	64
〈표 3-3〉 연도별·등록방식별 반려견 신규 등록 현황	65
〈표 3-4〉 연도별·등록방식별 반려견 누적 등록 현황	66
〈표 3-5〉 연도별·등록방식별 반려동물 누적 등록 현황	66
〈표 3-6〉 지역별·등록방식별 반려동물 신규 등록 현황(2024)	67
〈표 3-7〉 지역별·등록방식별 반려동물 누적 등록 현황(2024)	68
〈표 3-8〉 연구자료별 반려동물 등록률 조사 결과 비교	71
〈표 3-9〉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 추이	76
〈표 3-10〉 유형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2024)	77
〈표 3-11〉 지역별·유형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2024)	77
〈표 3-12〉 행정구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	79

제4장

〈표 4-1〉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	82
〈표 4-2〉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83
〈표 4-3〉 응답자 일반현황	84
〈표 4-4〉 반려동물 종류별 소유자 비율	85
〈표 4-5〉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85
〈표 4-6〉 소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86
〈표 4-7〉 반려동물 일반현황	87
〈표 4-8〉 반려동물 입양 경로	88
〈표 4-9〉 입(분)양 당시 반려동물 구입비 지출 여부	89
〈표 4-10〉 입(분)양 당시 반려동물 구입비	89
〈표 4-11〉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	89

〈표 4-12〉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 현황	90
〈표 4-13〉 반려동물 입양 경로별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 비율	90
〈표 4-14〉 입(분)양 이후 동물등록 현황	91
〈표 4-15〉 반려동물 등록률 현황	91
〈표 4-16〉 반려동물의 주요 특성별 등록률 현황	92
〈표 4-17〉 입(분)양 이후 동물등록 시기	93
〈표 4-18〉 반려견 등록 시 동물등록 대행기관 이용 여부	93
〈표 4-19〉 반려견 등록 시 이용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유형	93
〈표 4-20〉 반려견의 동물등록 방식	94
〈표 4-21〉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비용	94
〈표 4-22〉 향후 동물등록 의향	95
〈표 4-23〉 향후 반려견 등록 시 동물등록 방식	95
〈표 4-24〉 반려동물 미등록 이유	96
〈표 4-25〉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 수준	97
〈표 4-26〉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97
〈표 4-27〉 동물등록제 시행 및 등록률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	98
〈표 4-28〉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	99
〈표 4-29〉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99
〈표 4-30〉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	100
〈표 4-31〉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경험 여부	100
〈표 4-32〉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등록동물 보유율	101
〈표 4-33〉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통한 긍정적 효과 수준	101
〈표 4-34〉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한 견해	102
〈표 4-35〉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정보 변경에 대한 경험 여부	102

〈표 4-36〉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변경 신고 여부	103
〈표 4-37〉 반려동물 분실 후 다시 찾은 경험 여부	103
〈표 4-38〉 반려동물 분실 후 다시 찾은 평균 기간	103
〈표 4-39〉 반려동물 사망 후 등록 말소 신고 의향 여부	104
〈표 4-40〉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견해	104
〈표 4-41〉 반려견 비문 등록방식에 대한 견해	105
〈표 4-42〉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에 대한 인식	106
〈표 4-43〉 동물등록 갱신주기에 대한 인식	106
〈표 4-44〉 동물등록 갱신 비용 발생 시 찬성 의향	107
〈표 4-45〉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지 수준	107
〈표 4-46〉 등록동물 대상 차별화된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	108
〈표 4-47〉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109
〈표 4-48〉 「동물보호법」 내 주요 동물등록 관련 규정	110
〈표 4-49〉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전체)	111
〈표 4-50〉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반려견)	113
〈표 4-51〉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험 여부	114
〈표 4-52〉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114

제5장

〈표 5-1〉 미국 주요 지역의 동물등록 관련 규정	127
------------------------------	-----

부록

〈부표 1〉 미국 주별 동물등록 관련 요건	161
-------------------------	-----

제1장

〈그림 1-1〉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검색어 변화 트렌드	2
〈그림 1-2〉 연구추진체계도	12

제2장

〈그림 2-1〉 동물등록 신청서	19
〈그림 2-2〉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21
〈그림 2-3〉 동물등록 절차	24
〈그림 2-4〉 동물등록증	25
〈그림 2-5〉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6
〈그림 2-6〉 동물등록 방식 이미지	30
〈그림 2-7〉 동물등록제 시행 프로세스	34
〈그림 2-8〉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51
〈그림 2-9〉 동물사랑배움터의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52
〈그림 2-10〉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운영 사례(창원특례시)	55
〈그림 2-11〉 규제샌드박스 구성요소 및 운영 절차	56
〈그림 2-12〉 반려견 비문 인식 기능 및 프로세스	57

제3장

〈그림 3-1〉 반려견 등록률 추이	70
〈그림 3-2〉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 절차	72
〈그림 3-3〉 행정구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분포	79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함께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양육 가구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기준 국내 양육 가구 비율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28.6%이며, 2010년 이후 연평균 3.6% 증가함.

〈표 1-1〉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양육 가구 비율	17.4	21.8	27.7	25.9	25.4	28.2	28.6	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복지 요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69.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응답 비율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동물복지 요소 강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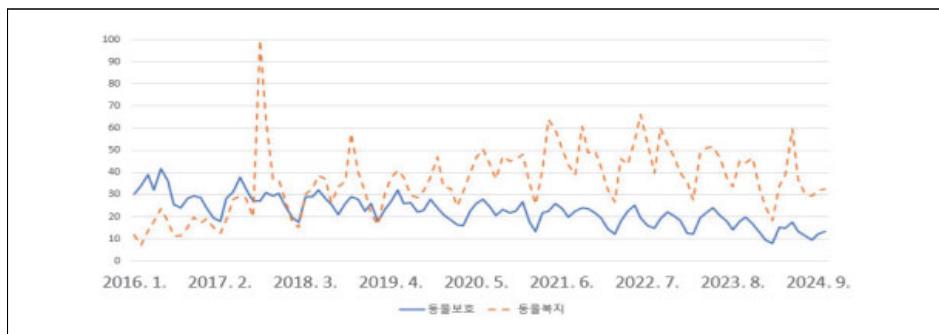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단위: %
						합계
응답 비율	1.4	4.7	24.2	45.3	24.4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c),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돌봄에 대한 인식도 ‘동물보호’에서 점차 ‘동물복지’로 변화하고 있음.¹⁾

-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검색어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2017년 8월 이후부터 ‘동물보호’보다 ‘동물복지’에 대한 검색어 활용 빈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검색어 변화 트렌드



자료: 홍재호·김동훈(202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반려동물 관련 이슈 변화 연구.

1) 홍재호·김동훈(202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반려동물 관련 이슈 변화 연구.

-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옴.
-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법 정계획인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음.²⁾
 - 특히, 올해 2월에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이 발표된 만큼 반려동물 복지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표 1-3〉 국내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주요 정책

구분	주요 정책
2008. 7.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발표
2014. 12.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 발표
2016. 1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발표
2020. 1.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 발표
2022. 12.	‘동물복지 강화방안’ 발표
2025. 2.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발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복지 부문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유실·유기동물의 지속적인 발생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국내 유실·유기동물 수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약 11만 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동물보호센터에 의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10만 6,824마리이며, 주로 개와 고양이 중심(개 77,304마리, 고양이 27,826마리, 기타 1,694마리)인 것으로 파악됨.

2)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종합계획 대상으로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과 함께 반려동물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수의 감소와 함께 운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1-4〉 연도별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단위: 마리, %
								연평균 증가율
구조동물 수	100,899	82,082	130,401	118,273	113,440	113,072	106,824	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표 1-5〉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구분	2013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단위: 개소, 백만 원, 일, %
								연평균 증가율
개소 수	341	307	280	269	239	228	231	-4.0
연간 운영비용	11,076	9,745	26,720	29,741	29,480	37,385	46,416	13.9
평균 보호기간	26.0	23.4	27.0	24.0	26.0	27.8	28.1	0.7

주: 운영비용은 자자체에서 부담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동물구조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위탁비 등 전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한편,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근거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14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되었음.
- 고양이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지자체 단위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등록이 가능함.

- 이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동물등록제의 대상 범위와 운영방식이 확대될 경우 등록률 제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등록제 홍보, 입양 전 교육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옴.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동물등록제 의무화가 시행 중이며, 고양 이를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도 다수 존재함. 또한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이처럼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강화 및 유실·유기동물 감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소유자 정보 변경, 동물 유실·사망 등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도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화에 따라 신규 등록 마릿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등록률 제고 문제는 여전히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반려묘의 등록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음.³⁾
- 반려동물의 등록률 제고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 강화와 함께 소유자의 인식 개선 및 참여 유인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등록 대행 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제약 요인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에는 펫테크 부문의 발전으로 기존 내장형 및 외장형 등록방식에

³⁾ 김동훈 외(2025)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야 전문가들은 반려묘를 포함한 동물등록 의무화를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로 평가함.

서 반려동물의 비문 등을 이용한 생체인식 등록방식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 변화를 고려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다양한 동물등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인지 여부 확인 및 준수 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의 현황과 등록 실태 및 활성화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해외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있음.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선행연구 검토

- 오기욱 외(2014)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조사 결과 반려견의

등록률이 낮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의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등록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 강화, 강제성 동반 및 등록 혜택 지원, 등록방식의 개선 등이 제시됨.

- 강원국 외(2016)는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물등록 여부와 동물등록제 관련 인식을 조사함. 조사 결과 미등록 소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미등록 이유는 동물등록제 관련 인식 부족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동물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 최아라·구혜경(2020)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반려견에 대한 애착 관계 유형을 ‘단순 동거형’, ‘친밀 동반형’, ‘강한 유대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동물등록제의 인식과 선호도를 분석함. 또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을 정책·소유자·수의업계·보험업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주체 간의 선순환구조를 통한 선진적 반려동물 양육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아람·송근호(2020)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함. 분석 결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연령, 학력, 주택 형태, 가계소득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반려동물 취득 경로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지 수준 및 등록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권용수(2021)는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제시함. 이 중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써 동물등록제 개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개선과 함께 반려묘의 등록대상 동물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동수·박구만(2022)은 반려견의 새로운 등록방식으로 논의·검토되고 있는 반려견 안면 인식 기술의 성능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함. 딥러닝 학습을 기반으로 반려견의 안면 검증과 안면 식별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 높은 수준의 정확성(각각 최고 93.46% 및 91.44%)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실·유기 동물 감소와 정부의 반려견 개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정민국·김동훈(2024)은 반려동물 영업업체 및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또한 반려동물 생애단계별 복지 개선방안의 하나로써 동물등록 대상 확대를 통한 등록률 향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려묘의 의무 등록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진홍(2025)은 반려동물의 등록 기준 관할지역(주소지, 거소지, 사육장소)과 실제 양육지역(사육장소)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련 법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등록 기준 관할지역과 소유자의 주소지 및 양육지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우선순위 기준을 실제 양육지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함.

2.2. 본 연구의 차별성

- 반려동물의 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됨.
- 그러나 대부분 단편적인 조사 연구로써 주로 한정된 지역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소수 항목 중심의 동물등록제 관련 인식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동물 의료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동물등록제 부문을 다루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동물등록 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등록방식에 관한 실험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실제 활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등록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동물등록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규정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반려동물 관련 등록 현황을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함.
- 또한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근거한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동물등록 실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을 중심으로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관련 인식을 심도 있게 분석함.
 - 특히,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신규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이와 함께 현재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다양한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 제2장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 현황을 검토함.
 -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의 개념 및 법적 근거, 등록대상, 등록 관련 규정, 등록 절차, 등록 대행기관, 등록방식, 과태료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제시함.
 -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정책 내에 포함된 동물등록 관련 내용을 제시함. 이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을 검토함.
- 제3장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및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현황을 파악함.
 - 주요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 등록방식, 등록률 현황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의 지정 절차 및 준수사항과 지정 현황을 파악함.
- 제4장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동물등록제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등록 실태,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관련 인식, 「동물보호법」내 동물등록 규정 관련 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 제5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반려동물 등록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함.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제6장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 결과의 종합적인 시사점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개선과제를 제시함.

3.2.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자료 검토

- 동물등록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법과 제도 및 정책자료를 면밀히 검토함.

- 관련 기관 통계자료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 주요 관련 기관의 동물등록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등록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동물등록제 관련 항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학계, 산업계, 수의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회

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동물등록제 관련 정보 및 의견수렴 결과를 연구 결과에 반영함.

4. 연구추진체계

-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그림 1-2〉 연구추진체계도

목 차	주요 내용	연구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및 정책 현황	➢ 동물등록제의 개념 및 관련 규정 ➢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 관련 법 및 정책자료 검토
반려동물 등록 관련 현황	➢ 반려동물 등록 현황 ➢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현황	➢ 관련 기관 통계자료 분석 ➢ 지자체 조례 검토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인식조사	➢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등록 실태 ➢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관련 인식 ➢ 동물등록 규정 관련 인식	➢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 지자체 조례 검토
해외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정책 현황 ➢ 국가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문헌 및 해외 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	➢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기본방향 ➢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과제	➢ 연구 결과 시사점 분석 ➢ 전문가 자문

자료: 연구진 작성.

2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및 정책 현황

1.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1.1. 개념 및 법적 근거

- 반려동물 등록제의 제도상 정식 명칭은 ‘동물등록제’로써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시·군·구 청에 등록하는 제도임.
 - 반려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을 때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동물등록제는 개를 대상으로 2008년 처음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걸쳐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 중임.

〈글상자 2-1〉 동물등록제 개요

■ 동물등록제

- (시범사업) 2008년 10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
 - 등록대상: 월령 3개월 이상인 개
- (의무화) 2014년 1월부터 동물등록 의무화
 - 등록대상: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시행지역) ('08) 1개 지자체 → ('09) 33개 → ('10) 48개 → ('11) 53개 → ('12) 53개 → ('13) 142개 → ('14) 1월 1일부터 전국 확대
- (형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현재 제외)

자료: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동물등록제는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시행됨.
 -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제1~8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의 등록과 관련된 조항은 제1장(총칙), 제3장(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6장(반려동물 영업), 제7장(보칙), 제8장(별칙)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각 조항에 해당하는 세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제1장(총칙)에서는 제2조(정의)를 통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명시함.
 - 제3장(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서는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부 규정을 명시함. 또한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를 통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 등록을 명시함.
 - 제6장(반려동물 영업)에서는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를 통해 동물등록과 관련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함.

- 제7장(보칙)에서는 제91조(수수료)를 통해 동물등록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명시함.
- 제8장(별칙)에서는 제101조(과태료)를 통해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명시함.

〈표 2-1〉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관련 주요 조항

구분		주요 조항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의무 및 등록 예외 지역 - 분실 및 소유자 인적 사항 변경에 따른 등록 시기 - 동물등록 대행 업무 - 등록 말소 및 등록 지원
	제18조 (맹견사육허가 등)	- 맹견 등록 의무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79조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 동물등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제7장 (보칙)	제91조 (수수료)	- 동물등록 관련 수수료
제8장 (별칙)	제101조 (과태료)	- 동물등록 위반 시 과태료

자료: 동물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8조, 제79조, 제91조, 제101조.

1.2. 등록대상

- ‘등록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의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명시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함.⁴⁾

○ 등록대상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동물 등록을 해야 함.

- 다만,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글상자 2-2〉 동물등록 규정 및 동물등록 제외지역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자료: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 또한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2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에서 맹견으로 규정된 개에 대해서는 등록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기존 반려견의 등록대상 월령은 3개월 이상이었으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9. 3. 12.)되어 시행(2020. 3. 21.)됨에 따라 2개월로 하향되었음. 이는 거래 가능 월령(2개월)과의 일치를 통해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글상자 2-3〉 맹견의 정의 및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자료: 동물보호법, 제2조, 제24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한편, 고양이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동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육 가구 수 및 유실·유기 고양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의 시범사업이 시행 중임.

- 2018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점차 확대되면서 2022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었음.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함.

〈글상자 2-4〉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개요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 (시행) 2018년 제주도 등 17개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
 - ('19) 33개 지자체 → ('20) 84개 → ('21)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등 146개 → ('22) 2월 1일부터 전국 확대
- (형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등록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c),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1.3. 등록 관련 규정

1.3.1. 신규 등록

- 등록대상 동물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글상자 2-5〉 등록대상 동물의 신규 등록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계속)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소유한 동물의 제4조 각 호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동물등록 신청서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등록대상 동물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반려동물 영업자인 경우에는 영업장의 명칭, 영업허가번호/영업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그림 2-1〉 동물등록 신청서

동물등록 신청서				
※ 비밀번호는 이두문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당초)
신청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동물 관리장소(주소) ※ 신청인이 주소와 동물을 실제 사육·관리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작성합니다.				
동물 관리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동물을 실제로 사육·관리하는 사람 정보를 작성합니다.				
성명 직위 전화번호				
동물	영업 정보 (신청인이 반려동물을 영업자인 경우)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영업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	성별 ♂ 양 ♀ 수	중성화 여 부
특이사항				
특수목적 '여'인 경우 체크 : [] 국가봉사동물, [] 치매인모조건, [] 수렵, [] 경비, [] 기타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약자)		
신청인 (서명 또는 약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3.2.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만약, 등록동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자 또는 등록동물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글상자 2-6〉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변경 신고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자료: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유자 및 동물 관련 정보와 변경사항 관련 정보가 포함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무료임.

- 동물등록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와 함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그림 2-2〉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small>* 비밀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사항란은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합니다.</small>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물	이름	동물등록번호
변경사항 발생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변경 <input type="checkbox"/> 소유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input type="checkbox"/>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시유가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음 <input type="checkbox"/>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음 <input type="checkbox"/> 등록동물이 죽음 <input type="checkbox"/>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small>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그 경위(날짜, 장소, 사유 등)</small>			
<small>『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small>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3.3. 등록 말소

- 「동물보호법」에는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말소 규정도 존재하며, 등록 말소 권한은 동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음.
- 등록 말소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등록 또는 변경 신고가 이루어 졌거나 소유자 또는 법인의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

〈글상자 2-7〉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말소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 동안 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 ⑦ 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되,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자료: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1.3.4. 영업자 준수사항

-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소유자뿐만 아니라 영업자⁵⁾에 대한 준수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5)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업종은 총 8개로 허가업종 4개(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와 등록업종 4개(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임.

- 영업자는 소유자가 해당 영업장 이용 시 등록·변경 신고 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변경 신고 의무를 고지해야 함.
-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지자체장에게 등록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함.

〈글상자 2-8〉 동물등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동물보호법」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자료: 동물보호법, 제78조, 제79조.

1.4. 등록 절차

- 일반적인 동물등록 절차는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 동물등록 대행기관 → 지자체의 경로를 거쳐 이루어짐.

〈그림 2-3〉 동물등록 절차



자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동물등록제도 안내, 검색일: 2025. 6. 10.

- 동물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소유자가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방식 선택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동물등록(신규, 분실, 정보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장은 동물정보, 동물등록번호(15자리 고유번호), 소유자 정보 등이 포함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동물보호법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동물등록, 등록 정보 변경, 분실신고, 입양 신청 등 반려동물 보호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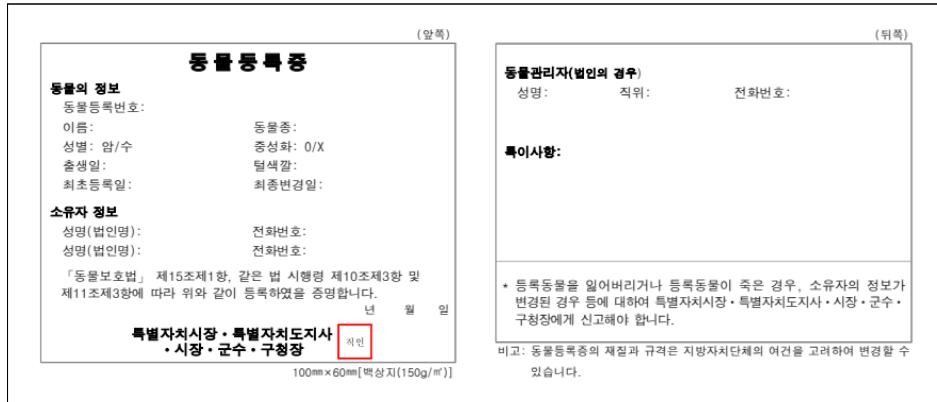
〈글상자 2-9〉 동물등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호정보 등의 수집·관리·공개 및 정보의 요청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동물보호법, 제95조.

〈그림 2-4〉 동물등록증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동물등록번호는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의미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됨.

-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에는 국내 표준규격에 부합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함.
-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해 무선식별장치를 재삽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함.

○ 만약, 동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무료임.

- 동물등록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그림 2-5〉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small>* 비란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를 합니다.</small>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동물관리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동물	이름	동물등록번호	
제발급사유	[] 분실·멸실	[] 체손	[] 그 밖의 사유
분실사유			
<small>「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small>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5. 등록 대행기관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동물등록 신청 및 접수, 무선식별장치 삽입, 동물등록증 발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동물등록대행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① 동물병원 개설자, ② 동물보호단체(비영리법인), ③ 동물보호 목적 법인, ④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⑤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⑥ 동물판매업자 등 총 6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 현재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주로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행 기관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시술은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함.

- 또한 동물등록 시 이용되는 무선식별장치 관련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및 영업 내에 게시해야 함.

〈글상자 2-10〉 동물등록 대행자의 범위 및 업무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
6.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 ②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 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 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자료: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1.6. 등록방식

- 현재 반려견의 동물등록 방식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식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이 있으며, 반려묘에 대해서는 개체 특성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음.⁶⁾
- 무선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의 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의미하며,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무선식별장치의 규격을 명시하고 있음.⁷⁾

〈글상자 2-11〉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장착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가.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 1) 구성: 총 15자리(국가코드3 + 개체식별코드 12)
- 2) 표시

코드 종류	기관코드 (5~9비트)	국가코드 (17~26비트)	개체식별코드 (27~64비트)
KS C ISO 11784	1	410	12자리

- 가) 기관코드(1자리):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나) 국가코드(3자리):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6) 기존에는 반려견의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함께 인식표 방식도 허용되었으나, 훼손 및 분실의 위험성으로 인해 2020년 8월 2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인식표 방식이 제외되었음.

7)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 다) 개체식별코드(12자리):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배정한 번호체계
- 나. 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2009)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 2007)에 따를 것(국제표준 규격 ISO 11784: 1996, ISO 11785: 1996을 포함한다)
 - 2)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를 것
 -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될 것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 등록방식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은 주사기를 이용해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등록대상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것으로 분실 및 파손 위험이 낮아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등록번호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신뢰성 및 보안성이 높고 반드시 수의사에 의해 시술이 이루어져야 함.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방식의 비용은 동물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등록 수수료(1만 원) 포함 약 3.5만~4.5만 원 수준이며,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인식표를 착용하는 것으로 내장형에 비해 간단하지만, 반려견의 실내외 활동에 의한 분실 및 파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음.
 - 분실 시 등록 정보를 상실할 수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동물등록 정보 변경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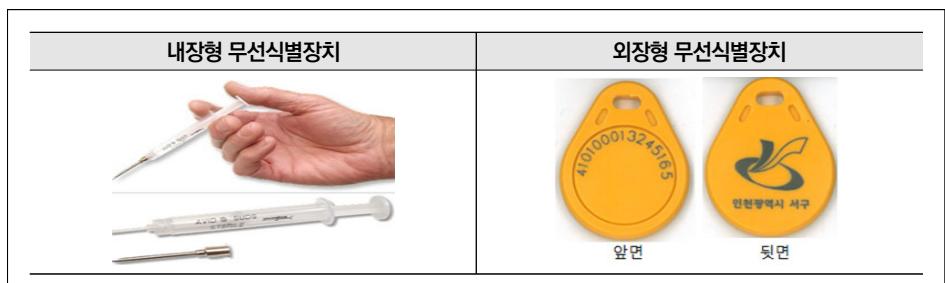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방식의 비용은 등록 수수료(3천 원) 포함 약 1.5만~2.5만 원 수준이며,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또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마찬가지로 시·도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있어야 함.

〈표 2-2〉 동물등록 방식 비교

구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대상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의 피하(어깨뼈 사이)에 주사기로 마이크로칩 삽입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인식표(목걸이, 펜던트 등) 부착
분실 위험	거의 없음(영구적)	활동에 의한 분실 파손 가능성 존재
신뢰성/보안성	높음(등록번호 위·변조 불가)	낮음(분실 시 등록 정보 상실)
등록 절차	수의사가 직접 시술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외장칩 지급 및 등록
비용	3.5만~4.5만 원 수준(수수료+칩 삽입 비용) * 동물병원에 따라 상이	1.5만~2.5만 원 수준(수수료+외장장치 비용)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6〉 동물등록 방식 이미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8. 21.), “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시행”.

1.7. 과태료

- 등록대상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영업자 또는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또한 등록대상 동물을 분실하였거나 소유자의 인적 사항 및 등록대상 동물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글상자 2-12〉 동물등록 위반 시 과태료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 16.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아니한 영업자
 - 20.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표 2-3〉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 원

관련 규정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소유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소유자가 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계속)

관련 규정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영업자가 법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0	50	100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2.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2.1.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정책 현황

- 국내 반려동물 등록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추진된 다양한 동물복지 관련 정책 내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제시·변화되어 옴.

2.1.1.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 8282호, 2007. 1. 26.)됨에 따라 동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동물보호·복지 종합 대책 수립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2008년 7월에 발표됨.
-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내 반려동물 분야의 정책과제는 ① 생산·유통단계의 관리체계 구축, ② 사육단계의 관리체계 구축, ③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체

계획, ④ 동물 사체 처리체계 구축, ⑤ 동물 소유자를 위한 배려 및 소유자-미소유자 간 이익 조화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됨.

○ 이 중 동물등록제는 ‘② 사육단계의 관리체계 구축’ 부문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국내 동물등록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도입 목적, 등록대상 동물, 지역별 실시 순위, 등록 방법, 등록 수수료, 동물등록 관련 인센티브, 제도 시행 프로세스 등의 내용이 제시됨.
- 도입 목적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및 유기·유실동물의 소유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기동물을 감소하기 위한 것임.

○ 등록대상 동물은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이며, 고양이는 개 등록제 성과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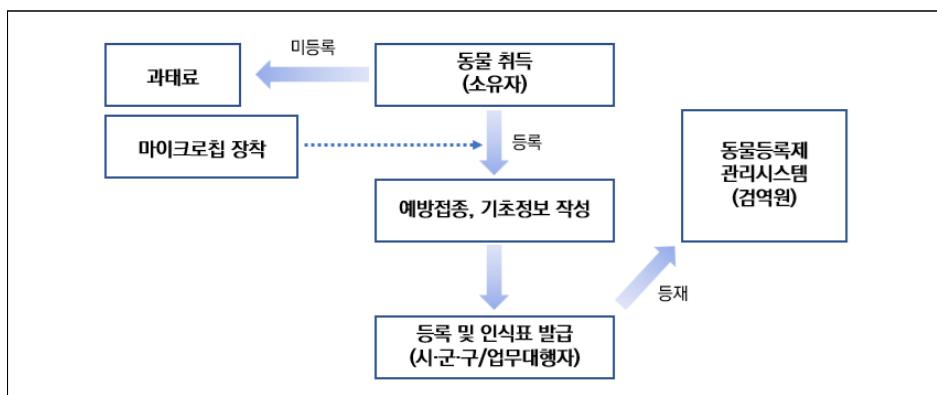
- 지역별 실시 순위는 ‘대도시 → 중·소도시 → 도농통합시·군’ 등의 순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함.
- 서울·인천 등 7대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읍·면 지역은 유기동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정책 수요가 낮을 것으로 판단함.
- 지자체 희망 및 반려동물 사육 규모, 유기동물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지역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로의 확산을 검토함.

○ 등록 방법은 인식표 부착 방법과 마이크로칩·인식표 병행 방법이 있으며,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자율 선택하는 것으로 설정함.

- 다만, 가급적 마이크로칩·인식표 병행 방법을 권장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마이크로칩(RFID)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 또는 지정등록처8)(시·군·구별 5~10개소)에 등록하고 전산망을 등재하도록 함.

- 매년 등록하도록 하되, 2년차부터는 등록 수수료를 감면하고 인터넷·우편 등록 등을 통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등록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하여 저소득층, 중성화수술 시행 동물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마련하기로 함.
- 동물등록제의 초기 정착을 위해 동물 소유자 및 동물등록제 시행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함.
 -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비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공원 내 자유 운동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등록 기간 준수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함.
 -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기동물 보호 관련 국비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등록 관련 정보시스템 무상 지원 및 컨설팅 인력 지원을 실시하기로 함.

〈그림 2-7〉 동물등록제 시행 프로세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7),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

8) 지정등록처: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병원, 애견센터(수의사와 업무 약정 체결) 등.

〈표 2-4〉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도입 목적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및 유기·유실동물의 소유자 확인 시스템 구축
등록대상	-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고양이는 개 등록제 성과에 따라 실시 여부 검토)
등록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도농통합시, 군 * 시범실시 후 제도를 보완하여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
등록방식	- 인식표 부착 방법과 마이크로칩·인식표 병행 방법 중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자율 선택
등록 방법	- 동물 취득 후 3개월 내 지자체 또는 지정등록에 등록하고 전산망 등재 * 지정등록처: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병원, 애견센터 등
등록 수수료	매년 등록, 2년차부터 등록 수수료 감면, 인터넷·우편 등록 등 편의 도모 등록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특정 사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 마련
인센티브	- 동물 소유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공원 내 자유 운동 공간 이용 등) * 등록 시기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 - 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유기동물 국비 예산, 등록 관련 시스템 및 컨설팅 인력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7),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

2.1.2.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

- 2014년 12월 발표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은 당시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5개년 종합계획임.⁹⁾
 - 그동안의 동물보호·복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 여건 및 국민 의식 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해당 계획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진 분야는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2.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3.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4. 추진체계 및 R&D임.
- 이 중 동물등록제 관련 내용은 세부 추진과제로써 주로 ‘1-① 동물 소유자 책

9) 당시 「동물보호법」에서는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통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임 강화’ 부문에 ‘동물등록제 정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지원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관련 제도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동물등록제의 보완·강화를 통해 등록률 향상 및 제도 정착을 모색하고자 함.

* 동물등록률: ('13년) 54.8% → ('16년) 75% → ('19년) 85%

○ 먼저, 동물등록 방법을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점차 일원화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훼손 및 분실 가능성이 낮아 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효과가 높은 내장형으로의 단계적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함.
- (현행)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16년) 내장형(개체 특성을 고려하여 외장형 제한적 허용).
- 부작용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내장형 선택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장형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동물등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구입 동물의 등록을 관리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등록 여부 확인 의무화를 추진하고자 함.

- 동물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구입자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동물병원 진료 시 등록 여부 확인과 진료기록부 내 동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자 함.

* 미등록 동물의 경우 1개월 내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함으로써 적극적인 등록 유도

○ 이와 함께 ‘1-① 동물 소유자 책임 강화’ 내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부문을 통해 유실·유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물을 분실했다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기로 함.

- 유실·유기 여부를 동물반환 이전에 판단하기 위해 동물을 분실한 경우에 대한 변경 신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현행 30일 → 개선 7일).

○ 한편, ‘4-⑪ 정책기반 공고화’ 내 ‘기초통계 보완’을 위해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관련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의하고자 함.¹⁰⁾

〈표 2-5〉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등록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점차적 일원화 * (현행)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내장형(개체 특성을 고려하여 외장형 제한적 허용)
등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구입 동물의 등록 관리 및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 확인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 시 등록 여부 확인 및 진료기록부 내 동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동물 분실 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기로 간주하여 처벌- 변경 신고 기간 단축((현행) 30일 → (개선) 7일)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예기간 설정
통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도록 통계청과 협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

2.1.3.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12월에 발표됨.

10) 기존에는 지자체별 등록대상 동물 행정조사, 연 1회 동물등록정보 일제 변경 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반려동물 수를 추정해 왔음.

- 해당 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는 1.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2.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강한 육성,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4.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임.
- 이 중 동물등록제 관련 세부 추진과제는 ‘2.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과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부문에 포함됨.
- 먼저, ‘2-② 동물보험 개발 여건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개체 인식기술 개발 및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를 제시함.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부작용 우려 해소 및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비문 인식, 홍채인식, DNA 등을 이용한 개체 인식 관련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이와 함께 고양이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 방지 및 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대상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또한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양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함.
- ‘3-① 동물등록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동물등록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세부 추진과제는 제외지역 명확화, 동물등록 절차 개선, 등록 월령 완화, 유실·유기동물 등록 여부 확인, 동물등록제 계도, 타 사업과의 연계, 과태료 부과·징수 등임.
- (제외지역 명확화)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도서’에서 ‘도서·벽지’로 명확화하고자 함.

- (기존)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 제외) → (개선) 도서, 벽지(대중교통이 어려운 자연부락)

- (동물등록 절차 개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동물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함.

- 전국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함.

* (현행)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 (개선) 관할 삭제

-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서면 변경 신고(유실) 시 분실경유서 등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변경 사유 발생일, 분실장소, 분실 원인 작성 및 분실 경위서 작성·첨부 → (개선) 분실 경위서 작성·첨부 삭제

-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동물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추진 절차: 소유자 APMS 회원가입 → 등록예약(작성) → 대행업체 확인(불러오기) → 대행업체 승인 요청 → 지자체 담당자 승인

-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소 변경 시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함.

- (등록 월령 완화) 등록 월령(생후 3개월 이상)을 판매 또는 거래 월령(생후 2개월 이상)과 일치시켜 동물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소비자가 동물판매업체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할 경우 판매자가 동물등록을 실시한 이후 판매를 추진하도록 함.

- (유실·유기동물 등록 여부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반환·분양 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함.

- 구조·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함.
- 미등록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내장형) 후 반환 또는 분양하도록 하며, 동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등록한 후 동물보호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함.

○ (동물등록제 계도)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계도 방안을 마련함.

- 전국에 걸쳐 동물등록 여부와 외출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함.
- 동물병원, 팻샵,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리플렛 및 포스터를 게시·배포함으로써 동물등록 시행을 계도하고자 함.
- 현행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외장형, 인식표)을 유지하되 내장형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및 홍보를 통해 내장형 시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타 사업과의 연계)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및 사업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반려동물 놀이터 및 문화센터, 미용·카페·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 시 동물등록증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추진하기로 함.
- 광견병 예방 접종비 지원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이 이루어진 개를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동물등록증 확인 및 진료기록부 내 동물등록번호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행정처분 표준처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함.
- 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군·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함.
* 위반자 적발 시·군·구는 행정처분 후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결과 통보
- 미등록 행위에 대한 단속은 등록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이전 과태료를 처분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약 10일)이 경과한 이후 재단속함.

○ 이와 함께 ‘3-④ 동물 소유자 책임 의식 고취’ 부문에서도 동물등록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됨.

- 동물 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가칭)펫파라치’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신고대상은 반려동물 미등록, 외출 시 준수사항 미이행, 인터넷 불법판매, 동물 학대 등으로 한정함.
* 포상금 지급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하며, 포상금은 과태료의 10~20% 수준
- 등록동물 유실 시 변경 신고 기한을 소유권 취득 기간(10일)과 일치시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 및 동물유기 방지를 추진하고자 함.
* (현행)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선) 등록대상 동물을 분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한편, ‘4-①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건강하고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민간지원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주요 업무 중 하나로써 동물등록제 지원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

- 주요 업무는 동물등록관리시스템(AMPS) 운영, 동물등록 방식 지원,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동물등록제 계도 및 홍보 등 지원 업무임.

○ 또한 ‘4-② 추진체계 정비 및 내실화’ 부문에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현행화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함.

- 동물생산업자 전수조사 이후 새울행정시스템(행자부) 등록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료 누락, 시스템 연계 오류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함.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동물등록(변경 신고)과 동물 유실신고 등의 입력·수정·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표 2-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등록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등록방식(내장형/외장형/인식표)을 유지하되, 내장형 시술에 대한 불안감 해소 - 개체 인식 신기술 개발 추진(비문인식, 흉채인식, DNA 등)
등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대상 확대 - 등록 월령(생후 3개월 이상)을 판매 또는 거래 월령(생후 2개월 이상)과 일치 - 소비자가 동물판매업체에서 반려동물 구입 시 판매자가 동물등록 실시 후 판매
등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동물등록 절차 개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및 시스템 보완 * (현행)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 (개선) 관할 삭제 -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서면 변경 신고(유실) 시 불필요한 행정 서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록동물 변경신청서 내 등록동물 변경 사유 작성으로 대체 -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동물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소유자 주소 변경 시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동물 유실 시 변경 신고 기한을 소유권 취득 기간(10일)과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선) 등록대상 동물을 분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유실·유기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여부 확인 및 반환 분양 시 동물등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내장형) 이후 반환 또는 분양
관리 및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동시 동물등록 여부 및 외출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동물병원, 팻샵,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리플릿 및 포스터 게시·배포 - ‘(가칭)펫파라치’ 제도 도입을 통한 미등록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지급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하며 포상금은 과태료의 10~20% 수준
타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 시 ‘동물등록증’ 확인에 대한 지자체 협조 추진 - 동물등록한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 개정 - 동물병원 진료 시 동물등록증 확인 및 진료기록부 내 등록번호 기재

(계속)

구분	주요 내용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자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 부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자자체로 일원화- 미등록 행위 단속은 이전 과태료를 처분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약 10일)이 경과한 후 재단속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지원조직 설립을 통한 동물등록제 관련 업무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등록관리시스템, 동물등록 방식,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계도 및 홍보 등- 동물보호정보관리시스템 내 등록 관련 제공 정보의 현행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2.1.4.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

- 2020년 1월 발표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두 번째 종합계획으로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 식 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됨.
-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의 주요 내용은 6대 분야와 26대 과제로 구성됨.
 - 6대 분야는 1.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3.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4.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5.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6.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임.
- 이 중 동물등록 관련 내용은 주로 ‘1-④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 명확화 및 동물등록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동물등록 제도의 공백과 동물등록 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함.
- (등록 범위)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반려동물 생산업 등 영업자가 번식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고양이 동물등록)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되, 등록방식 및 등록 기준 월령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하기로 함(처벌은 미규정).
- (등록 절차)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을 신청한 후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기로 함.
- (변경 신고 활성화) 변경 신고 의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변경 신고에 대한 현행화를 유도하고자 함.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사망 또는 분실된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 정보 변경을 의무화하기로 함.
- (등록방식)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고 바이오 인식방식 등 새 로운 동물등록 방식의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 방식의 폐지도 추진하고자 함.
- (점검 강화)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민간·공공시설에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함.
 -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문화센터 등 지자체 운영 시설 등에서 등록대상 동물 의 동물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시 출입 제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등록대상 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민간 사업장에 미등록 동물 출입을 제한 및 점검하는 방안을 협조하여 추진하기로 함.

〈표 2-7〉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등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생산업 등 영업자가 번식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에게 등록 의무 부과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확대(기준 월령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
영업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의 등록대상 동물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고 의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변경 신고 현행화 유도
등록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방식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도 폐지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출입 허용 민간·공공시설에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시 출입 제한(민간 사업장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2.1.5. 동물복지 강화방안

- 2022년 12월 발표된 ‘동물복지 강화방안’은 선진국 동향과 국내 실태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됨.
- ‘동물복지 강화방안’의 추진전략은 1.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2. 사전 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3.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과제가 제시됨.
- 이 중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내용은 ‘2-③ 동물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확대’ 부문에 제시됨.
-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반려동물 판매 등 영업단계에서부터 충동적인 동물 입양 예방을 위해 사전교육과 함께 동물등록 강화를 위한 신규 조치를 도입하고자 함.
 -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반려동물 판매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를 기존 판매업에서 생산·수입·판매업으로 확대하기로 함.

- 반려동물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소유자 대상 동물등록제 고지 관련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함.

- 동물 생체정보(비문, 안면 인식 등)를 활용한 신규 등록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술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필요 인프라 확충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정부24」를 통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입신고에 따라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자동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행안부 협업).

○ 동물 유실 시 소유자 반환을 위해 인식표 부착 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 인식표 규격·재질 및 부착 방법을 신설하고 GPS·QR코드 등 편의 기능 추가가 허용 등을 검토하기로 함.

○ 농촌(읍·면)지역 동물등록 의무화(현재 자율 시행) 및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등록 지원을 검토하기로 함.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은 공무원·수의사가 신청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실시해 주는 사업임.

〈표 2-8〉 ‘동물복지 강화방안’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영업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의 등록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판매업 → (개선)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 동물등록제 고지 등 실태점검 및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계속)

구분	주요 내용
등록방식	- 동물 생체정보를 활용한 등록방식 도입 검토 * 규제샌드박스 활용, 인프라 확충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변경 신고	- 「정부24」를 통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제공 - 소유자 전입신고에 따라 동물등록정보가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록 지역	- 농촌(읍·면)지역 동물등록 의무화 및 지원 검토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2.1.6.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 2025년 2월 발표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됨.
-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의 주요 추진과제는 1.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2. 인프라 확충, 3. 반려문화 확산, 4. 동물영업·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등임.
- 이 중 동물등록제 관련 내용은 '2-②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 부문을 중심으로 제시됨.
 - 동물등록 의무 및 지원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흥보·점검 강화, 인센티브 체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동물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또한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고 생체인식 방식 등의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등록 범위 확대) 지역 및 반려 목적 여부 등에 따라 등록 의무가 제외되었던 영역을 폐지하여 모든 개(생후 2개월령 이상)에 대하여 태어나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함.

- 동물생산업 영업장 내 부모견, 특수목적견(봉사동물·수렵견 등) 등 반려 목적 외 모든 개로 등록대상을 확대하기로 함.
-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견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의무화를 확대하기로 함.
-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여 등록 의무 제외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등록방식) 현행 법정 등록방식(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을 유지하되,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실증 특례 검증협의체 운영 및 결과 분석 후 민간 보험사 등이 개체식별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술표준 마련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비문 등 생체정보 인식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고 국가 봉사동물¹¹⁾과 동물등록 제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등록 지원) 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지역은 읍·면 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활용하여 동물등록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기로 함.

-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 수수료 지원을 검토하며, 자체별로 저소득층, 고령자,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함.

○ (변경 신고) 소유자 정보 변경, 동물 유실·사망 등 등록사항 변경 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변경 신고를 독려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함.

¹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관리체계) 반려견 동반 공공시설 등 이용 시 등록 여부 점검을 확대하고 제도 홍보 및 등록 유도를 추진하기로 함.

- 동물등록 후에는 동물병원에서 등록번호로 진찰기록을 관리하도록 권하는 등의 동물등록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 한편, '4-① 영업장 동물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영업장 내 동물등록 관련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의무화로 이력관리 시작점을 구축하고 자견 개체번호를 부모견 출산일과 연동시켜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수입업) 수입 검역 시 수입국의 동물등록번호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매 후 국내 등록번호와 연계할 수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표 2-9〉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등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개'(생후 2개월령 이상)에 대하여 태어나면 등록하도록 의무화- 동물생산업 영업장 내 부모견, 특수목적견 등 반려 목적 외 모든 개로 등록대상 확대- 동물보호 기관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견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의무화 확대
등록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여 현행 제외지역의 단계적 폐지 추진
등록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법정 등록방식을 유지하되,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검증 및 도입 검토<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특례 검증협의체 운영, 기술표준 마련, 시범사업 추진
등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지역은 지역 내 관공서를 활용하여 동물등록 전문센터 운영-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지원-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 수수료 지원 검토
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자 및 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자진신고 기간 내 변경 신고 독려 및 점검 강화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견 동반 공공시설 이용 시 등록 여부 점검을 확대하고 제도 홍보 및 등록 유도- 동물병원에서 등록번호로 진찰기록을 관리하도록 권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a),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표 2-10〉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동물등록 관련 추진계획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 제외지역 실태조사 및 여건 분석, 단계적 축소					
○ 등록대상 확대					
○ 동물등록 전문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동물등록 추진					
○ 실증특례 검증협의체 운영 및 기술표준 마련					
○ 변경 신고 독려 및 점검 강화					
○ 반려견 동반 공공시설 이용 시 점검 등 강화					
○ 동물등록 활용 확대 방안 마련·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a),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2.2.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

2.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정부는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매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며,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 달간은 지자체를 통해 등록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그림 2-8〉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 4. 29.),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동물등록 이후 반려견 및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와 등록한 동물을 분실하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 분실 또는 회수, 사망, 중성화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함.

2.2.2. 소유자 대상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 정부는 반려동물 예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통해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함.
- 현재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¹²⁾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전 숙지사항, 반려동물의 특징, 사회화 교육, 건강관리 등으로 구성됨.
 -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및 양육 중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음.
- 동물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반려견에 대한 입양 전 준비사항 중 하나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등록제의 개념 및 필요성, 등록 절차 및 방법, 등록방식, 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록 전 확인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그림 2-9〉 동물사랑배움터의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자료: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검색일: 2025. 6. 30.

12) ‘동물사랑배움터’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정부 유관기관이 함께 교육을 제공하는 동물보호·복지 종합 교육 포털 서비스임.

-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에 대한 이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소유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¹³⁾
 - 「동물보호법」에서도 소유자의 동물보호·복지 교육 관련 사항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글상자 2-13〉 동물등록 위반 시 과태료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⑦ 소유자들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자료: 동물보호법, 제4조.

- 다만,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 추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의무화 도입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정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 2022년 ‘동물복지 강화 방안’, 2025년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에 대한 의무화 추진계획을 제시함.

2.2.3.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음.

13) 정민국·김동훈(2024)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입양 전 교육에 대한 이수 비율은 23.7%(반려견 소유자 24.8%, 반려묘 소유자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규모가 다르지만 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표 2-11〉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관련 주요 사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금액
서울시(2023)	반려견, 반려묘(13,000마리)	내장형 등록비용 1만 원
광주 동구(2023)	반려견, 반려묘(300마리)	내장형 등록비용 최대 3만 원 * 1인당 3마리 한도 제한 및 영업업체 소유 반려견·반려묘 제외
경기도(2024)	반려견, 반려묘(3,000마리)	내장형 등록비용
용인시(2024)	반려견, 반려묘(1,000마리)	내장형 칩 1만 원 / 등록 대행비용 1만 원
여수시(2024)	반려견, 반려묘(510마리)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최대 4만 원 * 1인당 5마리 한도 제한 및 영업업체 소유 반려견 제외
강남구(2025)	반려견, 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최대 5만 1,000원
인천 서구(2025)	반려견, 반려묘(2,200마리)	내장형 등록비용의 50%(최대 2만 2,500원) * 외장형 또는 인식표 등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울산 남구(2025)	반려견	내장형 등록비용 최대 3만 원 * 1인당 3마리까지 지원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a),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2.2.4.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물등록 비용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짐.
 - 완주군(2021), 파주시(2022), 밀양시(2022), 나주시(2023), 창원특례시(2023), 서울 중구(2024), 군산시(2024), 고령군(2024), 서귀포시(2024) 전주시(2024), 여주시(2025) 등에서 시행된 바 있음.
-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란 주로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거나 동물등록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지자체나 등록 대행기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단계적 폐지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원 추진계획(2026~)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림 2-10〉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운영 사례(창원특례시)



자료: 창원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검색일: 2025. 6. 30.

2.2.5.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규 등록방식 도입 검토

- 정부는 현행 동물등록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물등록의 편의성 증진을 통한 등록률 향상을 위해 동물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규 등록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펫테크 부문의 발전으로 다양한 생체정보 관련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시장 내 시험 및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의미함.

- 또한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2-11〉 규제샌드박스 구성요소 및 운영 절차



자료: 규제샌드박스(<https://www.sandbox.go.kr>), 검색일: 2025. 7. 9.

○ 주로 반려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반려견의 생체인증 기술은 홍채 인식, 안면 인식, DNA 분석, 비문 인식 등이 있지만, 이 중 비문 인식기술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음.

- 비문 인식기술은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의 코주름 패턴을 인식하여 이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체를 식별하는 기술임.
- 카메라로 반려견의 코를 촬영하여 등록한 후 등록된 비문을 통해 해당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림 2-12〉 반려견 비문 인식 기능 및 프로세스



자료: 포인트경제(2022. 1. 18.), “[초점] 개의 코를 주목하다”.

- 지금까지 동물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 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사업은 비문 인식기술을 중심으로 총 9건이 승인됨.

〈표 2-12〉 반려동물 생체정보 기술 활용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승인일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본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	2021. 5. 26.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본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	2021. 12. 23.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동물의 비문(Nose Print)을 촬영하면 이미지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비문 패턴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2022. 9. 16.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 비문 인식 장비를 통해 반려견의 비문을 인식하고 패턴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국가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	2022. 11. 30.
모바일 비문인식 기반 간편 동물등록 서비스의 시범운영 및 실증	- 동물등록을 위해 개의 비문(코주름)을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하여 추출된 개체식별 고유정보를 활용해 간편 동물등록 서비스 실증	2023. 11. 24.

(계속)

사업명	주요 내용	승인일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동물의 비문을 촬영(Nose Print)하여 머신러닝 AI로 최적화된 생체 특징정보를 취득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	2024. 1. 22.
반려동물 복정맥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근적외선 복정맥 리더기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의 복정맥 영상을 촬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을 통해 반려동물의 정맥 패턴을 인식하여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	2024. 1. 22.
비문인식 및 DNA 기반 동물등록 시스템	- 간편하게 반려동물의 비문을 인식할 수 있는 웹/앱 개발 및 비문, DNA 기반 기술 성능 검증 - (반려견) 비문 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안면 이미지와 DNA 검사 값을 숫자 값으로 변환하여 기업 내부 동물등록시스템에 연계 - 비문인식 성능 평가, DNA 기반 동물개체식별 성능 평가, 비문 인식 및 DNA 기반 동물등록 시스템 실증 결과를 토대로 신규 동물등록 기준(안) 마련	2024. 12. 30.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 반려견의 비문을 접촉·비접촉 방식으로 취득하고 비문 특징점을 추출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서비스	2025. 8. 27.

자료: 규제샌드박스(<https://www.sandbox.go.kr>), 검색일: 2025. 7. 9.

○ 일부 지자체는 반려견의 생체정보 기술을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수행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신규 등록방식(비문 등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함.

- 강원도 춘천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반려견 비문 인식 기반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내 반려견 500마리를 대상으로 비문·안면 정보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함.¹⁴⁾
- 경기도 화성시는 2023년 '비문 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① 비문 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시범사업, ② 화성시민 및 관내 동물 관련 영업장 대상 사업 추진 홍보, ③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개최 참여, ④ 협약기관 간 상호 홍보 등을 추진함.¹⁵⁾
- 창원특례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반려견 비문 등록 서비스 앱인 '창원퍼

14) 강원도민일보(2024. 10. 28.), “춘천시 ‘반려동물 비문등록 서비스’ 외면 왜?”.

15) 뉴스펫(2023. 3. 29.), “비문인식 동물등록, 본궤도 올랐다... 화성시, 시범운영 돌입”.

피앱'을 출시하였으며,¹⁶⁾ 2024년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문 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함.¹⁷⁾

- 고양특례시는 2025년 4월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반려견의 비문 등록을 포함한 AI 기반 동물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외장형 등록과 비문 등록을 병행할 경우, 마리당 1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함.¹⁸⁾
- 경기도 안양시는 2025년 6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내 반려견을 대상으로 비문 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함. 지원 내용은 ①(미등록견) 비문 등록 및 외장형 동물등록 무료 지원, ②(외장형 등록견) 비문 등록 및 인식표 무료 지원, ③(내장형 등록견) 비문 등록이 가능하지만, 인식표 지원은 불가함.¹⁹⁾

16) 경남일보(2023. 12. 28.), “창원시, 전국 최초 반려견 비문등록 ‘창원퍼피앱’ 출시”.

17) 경남도민일보(2024. 4. 22.), “창원시 반려동물 등록 칩 아닌 ‘코무늬’로 시범사업”.

18) 대한투데이(2025. 4. 11.), “고양특례시, 반려동물 비문등록 활성화로 유실견 예방 나선다”.

19) 안양시 동물보호복지플랫폼(<https://www.anyang.go.kr/animal/selectBbsNttView.do?key=4931&bbsNo=2077&nttNo=404390>), 검색일: 2025. 7. 9.

3

반려동물 등록 관련 현황

1. 반려동물 등록 현황

1.1. 등록 마릿수 현황

- 국내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임.
 -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2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짐. 20)
-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 마릿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25만 9,909마리이며, 죽은 개체를 제외한 누적 마릿수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349만 1,607마리인 것으로 나타남.

20)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반려견을 중심으로 동물등록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신규 등록동물과 누적 등록동물 중 반려견의 비율은 각각 94.4%와 98.4%임.
- 2024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전년 대비 4.9% 감소한 24만 5,236마리이며, 누적 마릿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343만 4,624마리임.
- 2024년 신규 등록된 반려묘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만 4,673마리이며, 누적 마릿수는 전년 대비 35.7% 증가한 5만 6,983마리임.

○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2014년 이후의 등록 추세를 살펴보면 신규 등록 마릿수는 2024년까지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누적 등록 마릿수는 연평균 14.7% 증가함.²¹⁾

- 반려견의 신규 등록 마릿수는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연평균 2.5% 증가하였으며,²²⁾ 누적 등록 마릿수는 연평균 14.5% 증가함.
- 반려묘의 신규 등록 마릿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 14.9%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누적 등록 마릿수는 연평균 51.0% 증가함.
- 다만, 반려묘에 대한 등록 현황 조사는 2021년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 이전의 반려묘 등록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²³⁾

²¹⁾ 의무화 이전 연도별 신규 등록 마릿수: ('08년) 5,540마리 → ('09년) 95,171마리 → ('10년) 65,488마리 → ('11년) 26,909마리 → ('12년) 20,737마리 → ('13년) 479,147마리

²²⁾ 2019년 신규 등록 마릿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2019. 7. 1.~8. 31.) 운영, 범국민 대상 홍보 및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으로 보임(농림축산식품부, 2020).

²³⁾ 전국 단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실시됨.

〈표 3-1〉 연도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신규 등록			누적 등록		
	반려견	반려묘	합계	반려견	반려묘	합계
2014	192,274		192,274	887,966		887,966
2015	91,232		91,232	979,198		979,198
2016	91,509		91,509	1,070,707		1,070,707
2017	104,809		104,809	1,175,516		1,175,516
2018	146,617		146,617	1,304,077		1,304,077
2019	797,081		797,081	2,092,163		2,092,163
2020	235,637		235,637	2,321,701		2,321,701
2021	500,321	9,683	510,004	2,766,250	16,559	2,782,809
2022	290,958	11,639	302,597	3,025,859	28,483	3,054,342
2023	257,989	13,184	271,173	3,244,234	41,982	3,286,216
2024	245,236	14,673	259,909	3,434,624	56,983	3,491,607
연평균 증가율	2.5	14.9	3.1	14.5	51.0	14.7

주: 반려묘에 대한 등록 현황 조사는 2021년부터 이루어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2024년 기준 지역별 등록 마릿수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등록과 누적 등록 모두 경기(각각 28.0%, 29.5%)와 서울(각각 13.7%, 17.0%)이 많은 가운데 두 지역의 비율은 전체의 41.7%와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 등록 마릿수는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경북(7.1%), 인천(6.2%), 경남(5.9%), 충남(5.1%), 부산(5.1%) 등의 순이며, 세종(0.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누적 등록 마릿수는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인천(6.7%), 부산(6.2%), 경남(5.7%), 경북(4.4%), 대구(4.2%) 등의 순이며, 신규 등록 마릿수와 마찬가지로 세종(0.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지역별 등록 현황은 지역별 인구수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음.²⁴⁾

〈표 3-2〉 지역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2024)

단위: 마리, %

구분	신규 등록		누적 등록	
	등록 마릿수	비율	등록 마릿수	비율
전국	259,909	100.0	3,491,607	100.0
서울	35,526	13.7	594,589	17.0
부산	13,298	5.1	215,839	6.2
대구	10,519	4.0	146,860	4.2
인천	16,181	6.2	232,349	6.7
광주	6,549	2.5	81,097	2.3
대전	7,672	3.0	109,432	3.1
울산	4,496	1.7	65,155	1.9
세종	1,618	0.6	18,698	0.5
경기	72,783	28.0	1,030,393	29.5
강원	8,198	3.2	113,370	3.2
충북	8,545	3.3	108,716	3.1
충남	13,310	5.1	142,138	4.1
전북	10,878	4.2	102,732	2.9
전남	10,708	4.1	111,575	3.2
경북	18,410	7.1	152,203	4.4
경남	15,391	5.9	198,878	5.7
제주	5,827	2.2	67,583	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c),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1.2. 등록방식별 현황

-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반려견의 등록방식별 신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비율은 각각 48.9%와 51.1%로 외장형 등록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24) 행정안전부의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5,121만 7,221명이며, 지역별 비중은 경기(26.7%), 서울(18.2%), 부산(6.4%), 경남(6.3%), 인천(5.9%), 경북(4.9%), 대구(4.6%) 등의 순임(행정안전부, 검색일: 2025. 7. 15.).

- 2020년까지는 내장형 등록 비율이 외장형보다 높았으나, 2021년부터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내장형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2015년 이후 내장형 신규 등록 마릿수는 연평균 10.2% 증가하였으며, 외장형 신규 등록 마릿수는 연평균 16.0% 증가함. 반면, 인식표는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2.7% 감소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제도에 따른 폐지로 인해 동물등록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표 3-3〉 연도별·등록방식별 반려견 신규 등록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합계	
	등록 마릿수	비율						
2015	50,213	55.0	33,027	36.2	7,992	8.8	91,232	100.0
2016	59,663	65.2	25,292	27.6	6,554	7.2	91,509	100.0
2017	70,777	67.5	27,005	25.8	7,027	6.7	104,809	100.0
2018	89,482	61.0	40,657	27.7	16,478	11.2	146,617	100.0
2019	353,489	44.3	250,271	31.4	193,321	24.3	797,081	100.0
2020	138,828	58.9	41,878	17.8	54,931	23.3	235,637	100.0
2021	227,863	45.5	265,658	53.1	6,800	1.4	500,321	100.0
2022	134,375	46.2	156,583	53.8	-	-	290,958	100.0
2023	125,338	48.6	132,651	51.4	-	-	257,989	100.0
2024	119,900	48.9	125,336	51.1	-	-	245,236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또한, 2024년 기준 반려견의 등록방식별 누적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비율은 각각 49.9%와 50.1%이며, 2022년 이후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3-4〉 연도별·등록방식별 반려견 누적 등록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내장형		외장형		합계	
	등록 마릿수	비율	등록 마릿수	비율	등록 마릿수	비율
2022	1,506,651	49.8	1,519,208	50.2	3,025,859	100.0
2023	1,616,587	49.8	1,627,647	50.2	3,244,234	100.0
2024	1,715,433	49.9	1,719,191	50.1	3,434,624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반려견과 반려묘를 합친 등록방식별 누적 동물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방식의 비율은 각각 50.8%와 49.2%로 내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단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실시된 2022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내장형 등록방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장형 등록방식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연도별·등록방식별 반려동물 누적 등록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내장형		외장형		합계	
	등록 마릿수	비율	등록 마릿수	비율	등록 마릿수	비율
2022	1,535,128	50.3	1,519,214	49.7	3,054,342	100.0
2023	1,658,538	50.5	1,627,678	49.5	3,286,216	100.0
2024	1,772,385	50.8	1,719,222	49.2	3,491,607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2024년 기준 등록방식별 신규 등록 현황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 내 신규 등록 마릿수 대비 내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74.0%)이며, 다음으로 전남(63.6%), 경북(62.3%), 강원(59.6%), 전북(56.3%), 대전(5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내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37.5%)이며, 다음으

로 인천(38.4%), 대구(39.7%), 광주(45.1%), 세종(46.5%), 울산(48.6%) 등의 순임.

- 내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높은 곳은 11개 지역이며, 외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높은 지역은 6개인 것으로 나타남.

<표 3-6> 지역별·등록방식별 반려동물 신규 등록 현황(2024)

단위: 마리, %

구분	내장형		외장형		합계	
	등록 마릿수	비율	등록 마릿수	비율	등록 마릿수	비율
전국	134,573	51.8	125,336	48.2	259,909	100.0
서울	18,724	52.7	16,802	47.3	35,526	100.0
부산	4,982	37.5	8,316	62.5	13,298	100.0
대구	4,177	39.7	6,342	60.3	10,519	100.0
인천	6,217	38.4	9,964	61.6	16,181	100.0
광주	2,952	45.1	3,597	54.9	6,549	100.0
대전	4,294	56.0	3,378	44.0	7,672	100.0
울산	2,183	48.6	2,313	51.4	4,496	100.0
세종	752	46.5	866	53.5	1,618	100.0
경기	36,543	50.2	36,240	49.8	72,783	100.0
강원	4,886	59.6	3,312	40.4	8,198	100.0
충북	4,364	51.1	4,181	48.9	8,545	100.0
충남	7,236	54.4	6,074	45.6	13,310	100.0
전북	6,128	56.3	4,750	43.7	10,878	100.0
전남	6,808	63.6	3,900	36.4	10,708	100.0
경북	11,462	62.3	6,948	37.7	18,410	100.0
경남	8,554	55.6	6,837	44.4	15,391	100.0
제주	4,311	74.0	1,516	26.0	5,827	100.0

주: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은 내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외장형보다 높은 지역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c),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또한, 2024년 기준 등록방식별 누적 등록 현황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 내 누적 등록 마릿수 대비 내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81.0%)이며, 다음으로 경기(55.1%), 대전(53.5%), 부산(53.2%), 서울(50.0%), 전북(4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내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37.3%)이며, 다음으로 충북(42.1%), 경북(43.5%), 충남(45.5%), 울산(46.4%), 전남(46.9%) 등의 순임.
- 내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높은 곳은 4개 지역이며, 외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높은 지역은 13개인 것으로 나타남.

〈표 3-7〉 지역별·등록방식별 반려동물 누적 등록 현황(2024)

구분	내장형		외장형		합계	
	등록 마릿수	비율	등록 마릿수	비율	등록 마릿수	비율
전국	1,772,385	50.8	1,719,222	49.2	3,491,607	100.0
서울	297,272	50.0	297,317	50.0	594,589	100.0
부산	114,802	53.2	101,037	46.8	215,839	100.0
대구	54,724	37.3	92,136	62.7	146,860	100.0
인천	113,004	48.6	119,345	51.4	232,349	100.0
광주	38,704	47.7	42,393	52.3	81,097	100.0
대전	58,510	53.5	50,922	46.5	109,432	100.0
울산	30,208	46.4	34,947	53.6	65,155	100.0
세종	9,024	48.3	9,674	51.7	18,698	100.0
경기	567,964	55.1	462,429	44.9	1,030,393	100.0
강원	56,405	49.8	56,965	50.2	113,370	100.0
충북	45,749	42.1	62,967	57.9	108,716	100.0
충남	64,719	45.5	77,419	54.5	142,138	100.0
전북	51,306	49.9	51,426	50.1	102,732	100.0
전남	52,301	46.9	59,274	53.1	111,575	100.0
경북	66,232	43.5	85,971	56.5	152,203	100.0
경남	96,704	48.6	102,174	51.4	198,878	100.0
제주	54,757	81.0	12,826	19.0	67,583	100.0

주: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은 내장형 등록방식 비율이 외장형보다 높은 지역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c),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1.3. 등록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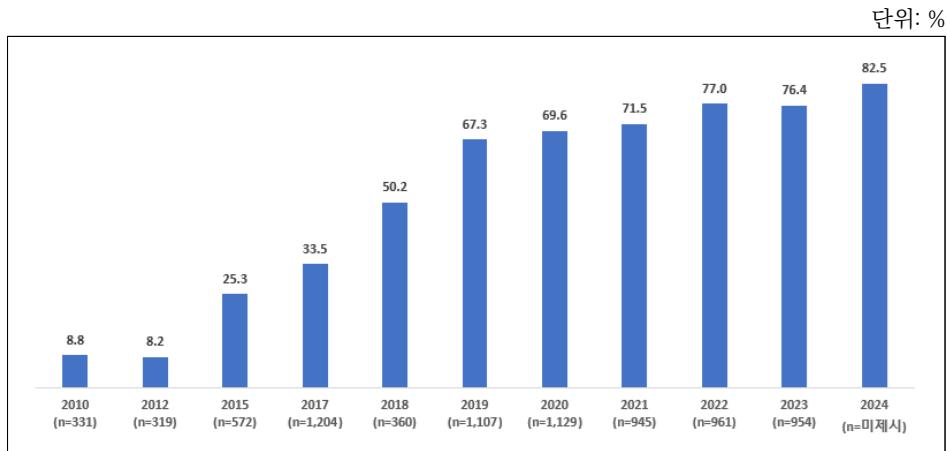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등록률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²⁵⁾
- 이에 따라 그동안 다수의 연구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시기 및 조사 대상 표본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조사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 이 중 반려견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반려견 등록률의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임.²⁶⁾
 -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회(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 제외)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명칭은 2022년까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였으나, 2023년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로 변경됨.
-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의 등록률은 2010년 8.8%를 시작으로 2024년 82.5%까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표본조사에 따른 결과로써 보는 시각에 따라 등록률 수준을 다르게

25)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까지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를 추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후로는 발표하지 않고 있음.

26)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회(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 제외)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명칭은 2022년까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였으나, 2023년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로 변경됨.

인식할 수는 있으나,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등록률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음.

〈그림 3-1〉 반려견 등록률 추이



주: (n)은 해당연도의 조사 표본 수를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한편, 이 외에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2014년 이후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제시한 자료 및 선행연구로는 오기욱 외(2014), 강원국 외(2016), 최아라·구혜경(2020), 한아람·송근호(2020), 정민국·김동훈(2024),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2023, 2024, 2025) 등이 있음.
-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시된 바와 같이 반려견을 중심으로 한 동물등록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대상과 표본 규모가 상이하여 정확한 등록률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반려견의 경우 최소 52.0%에서 최대 81.1%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70%대 이상의 등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묘에 대한 등록률 조사는 정민국·김동훈(2024)이 유일하며, 조사 결과 29.1%의 등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연구자별 반려동물 등록률 조사 결과 비교

연구자 / 조사기관	조사 결과
오기욱 외 (2014)	<p>■ 등록률: (반려견) 3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표본: 전라북도 익산시 반려동물 소유자 300명 - 조사 기간: 2014. 5.
강원국 외 (2016)	<p>■ 등록률: (전체) 4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표본: 반려동물 소유자 234명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 조사 기간: 2016. 4. 6.~2016. 5. 19.
한아람·송근호 (2020)	<p>■ 등록률: (전체) 3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표본: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 응답자 3,363명 - 조사 방법: 2차 자료 이용
최아라·구혜경 (2020)	<p>■ 등록률: (소형견) 5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표본: 전국 소형견 소유자 250명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 조사 기간: 2019. 5. 24.~2019. 5. 28.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	<p>■ 등록률: (반려견) 7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표본: 전국 반려견 소유자 485명 -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 조사 기간: 2022. 10. 28.~2022. 11. 2.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4)	<p>■ 등록률: (반려견) 7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표본: 전국 반려견 소유자 531명 -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 조사 기간: 2023. 12. 12.~2023. 12. 17.
정민국·김동훈 (2024)	<p>■ 등록률: (전체) 62.9% / (반려견) 81.1% / (반려묘) 2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표본: 전국 반려동물 소유자 1,099명 * 반려견 소유자 691명 / 반려묘 소유자 408명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 조사 기간: 2024. 7. 16.~2024. 8. 14.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5)	<p>■ 등록률: (반려견) 7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표본: 전국 반려견 소유자 823명 -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 조사 기간: 2024. 12. 23.~2025.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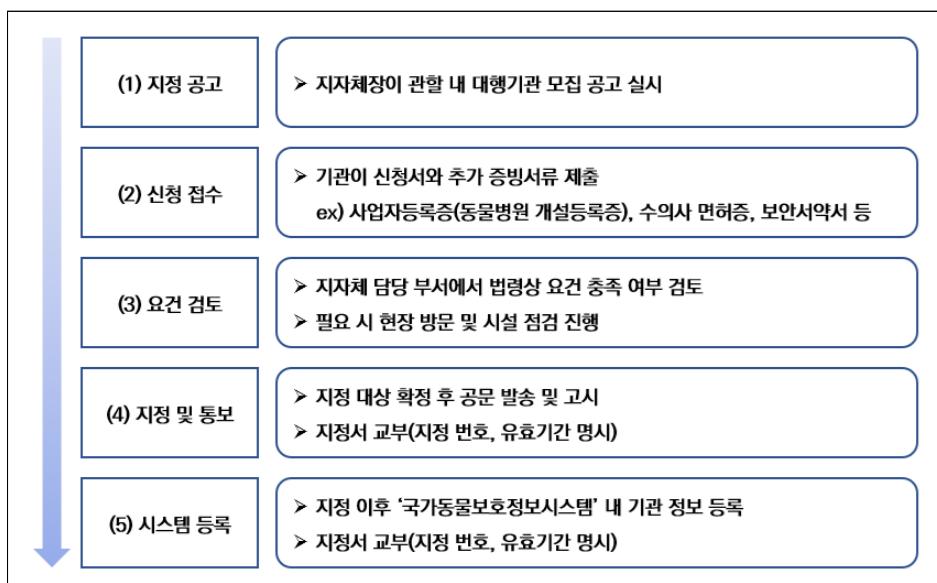
자료: 오기욱 외(2014); 강원국 외(2016); 한아람·송근호(2020); 최아라·구혜경(2020); 정민국·김동훈(2024);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2023, 2024, 2025).

2.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현황

2.1. 지정 절차 및 준수사항

-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4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제7항에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
-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일반적인 지정 절차는 「지자체 지정 공고 → 기관 신청 접수 → 요건 검토 및 확인 → 지정 및 통보 → 시스템 등록」 등의 순으로 이루어짐.

〈그림 3-2〉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 절차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와 함께 지자체장은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 주요 숙지사항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주요 숙지사항은 동물등록 방법,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고시 내 규정 사항 등임.

〈글상자 3-1〉 동물등록 대행기관 대상 교육 관련 규정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자료: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

-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세부 준수사항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등록 이후 지자체 통보 관련 사항은 대부분 포함됨.
- 일부 지자체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등록 이후 5일 내 통보를 명시하고 있음.

〈글상자 3-2〉 서울특별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6조.

- 경기도 광주시는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보고 기간(5일) 규정과 함께 지자체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관리 규정 또한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정취소 규정을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음.

〈글상자 3-2〉 광주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련 조례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대행자 관리)

① 시장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자료: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를 통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보고 기간(7일) 규정과 함께 지자체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글상자 3-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② 제1항에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대행자 관리)

-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의 시장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을 해지한다.

-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자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6조, 제7조.

- 경기도 평택시 또한 자체적인 조례를 통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등록 및 보고 의무와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글상자 3-2〉 평택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련 조례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대행자 지정 등)

-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

(계속)

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등록 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③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한다.

자료: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2.2. 지정 현황

- 2024년 기준 지자체가 동물등록 업무 대행을 위해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는 총 4,408개소이며, 2009년 500개소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견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2014년 이후 연평균 3.1% 증가함.

〈표 3-9〉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 추이

구분	2009	2010	2014	2015	2020	2021	2024	단위: 개소, %
								연평균 증가율 (2014~2024)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	500	731	3,239	3,602	3,690	3,989	4,408	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2024년 기준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물병원이 3,889개소(8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물판

매업자 334개소(7.6%), 동물보호센터 159개소(3.6%), 동물보호단체·법인 14개소(0.3%), 민간동물보호시설 12개소(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0〉 유형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2024)

구분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법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판매업자	단위: 개소(%)	
						합계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	3,889 (88.2)	14 (0.3)	159 (3.6)	12 (0.3)	334 (7.6)	4,408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c),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2024년 기준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를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경기가 1,324개소(3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970개소(22.0%), 부산 288개소(6.5%), 경남 254개소(5.8%), 인천 228개소(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와 서울 두 지역의 비율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0개소(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주 66개소(1.5%), 울산 73개소(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앞에서 제시한 지역별 신규 및 누적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결과임.

〈표 3-11〉 지역별·유형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2024)

구분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법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판매업자	합계	
						대행기관 수	비율
전국	3,889	14	159	12	334	4,408	100.0
서울	885	5	32	1	48	970	22.0
부산	257	-	8	1	22	288	6.5
대구	160	-	26	-	4	190	4.3

(계속)

구분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법인	동물 보호센터	민간동물 보호시설	동물 판매업자	합계	
						대행기관 수	비율
인천	213	-	8	-	7	228	5.2
광주	112	-	1	-	2	115	2.6
대전	107	-	1	-	7	115	2.6
울산	53	1	9	3	7	73	1.7
세종	20	-	-	-	-	20	0.5
경기	1,179	1	27	1	116	1,324	30.0
강원	107	3	4	-	25	139	3.2
충북	105	-	4	-	11	120	2.7
충남	123	2	5	-	6	136	3.1
전북	97	-	14	-	12	123	2.8
전남	96	1	8	2	33	140	3.2
경북	98	1	5	1	1	106	2.4
경남	215	-	6	3	30	254	5.8
제주	62	-	1	-	3	66	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c),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리스트를 이용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분포를 행정구역 유형에 따라 도시지역(동)과 농촌지역(읍·면·리)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를 확인한 결과 2024년 기준 대행기관 수(4,408개소)보다 145개소 많은 4,553개소로 나타남.²⁷⁾
- 행정구역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에 위치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는 총 3,911개소(85.9%)이며, 농촌지역에 위치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수는 총 642개소(14.1%)로 나타나 행정구역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행정구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도시지역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주로 수도권과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되

²⁷⁾ 2025년 7월 30일 기준임.

어 있고 밀도가 높은 반면, 농촌지역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밀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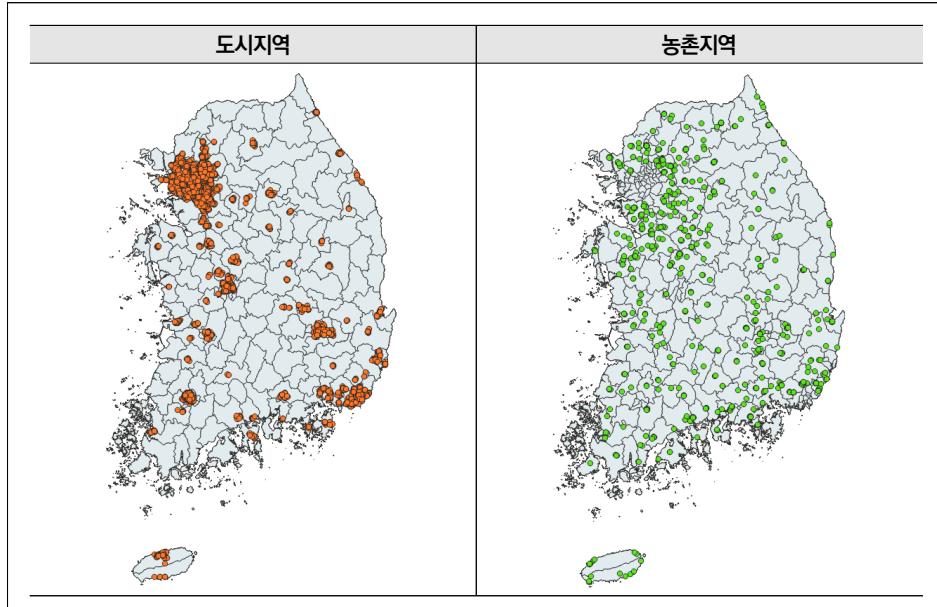
- 이를 통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지역 내 인구수와 반려동물 양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2〉 행정구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

구분		개소	비율
농촌	동	3,911	85.9
	읍	461	10.1
	면·리	181	4.0
	계	642	14.1
합계		4,553	100.0

자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일: 2025. 7. 30.

〈그림 3-3〉 행정구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분포



자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일: 2025. 7. 30.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4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등록 관련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 분포를 반영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기간은 2025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1개월)까지이며,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한 온라인 조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 주요 조사 내용은 응답자 일반현황,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등록 실태,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관련 인식, 「동물보호법」내 동물등록 규정 관련 인식,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에 대한 주요 정책 및 이슈 검토를 통해 세부 조사 항목을 발굴하여 포함하였음.²⁸⁾

28)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등록 실태의 경우, 한 소유자가 다수의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양육 중인 모든 반려동물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도록 함.

〈표 4-1〉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

구분	조사 내용
(SQ)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지역 형태, 주택 형태
(A)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등록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현황(종류, 체급, 성별, 나이, 양육 기간, 중성화수술 여부, 입양 경로, 입(분)양 당시 구입비, 월평균 양육비 등) - 등록 현황(등록 여부, 등록 시기, 대행기관 이용 여부, 대행기관 유형, 등록방식, 미등록 이유 등)
(B)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제 인지도/필요성/기대효과 - 고양이 동물등록 관련 인식 - 입양 전 교육 관련 경험 및 견해 - 동물등록 변경 신고 경험 및 말소 신고 의향 - 동물등록 방식 및 동물등록 간편제 도입 관련 견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인지도 - 등록동물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 견해 -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C)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규정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적절성 - 과태료 부과 경험 및 부과 내용
(D)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여부, 동거가족 수,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자료: 연구진 작성.

2. 조사 결과

2.1. 응답자 일반현황

- 조사 대상 반려동물 소유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이 각각 26.9%와 1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²⁹⁾

²⁹⁾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분포 특성(경기(26.7%), 서울(18.2%), 부산(6.4%), 경남(6.3%), 인천(5.9%), 경북(4.9%), 대구(4.6%) 등의 순)과 유사하도록 조사 표본을 비례 할당하였기 때문임.

〈표 4-2〉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지역	빈도	비율	지역	빈도	비율
서울	181	18.1	충북	32	3.2
부산	63	6.3	충남	44	4.4
대구	46	4.6	전북	34	3.4
인천	59	5.9	전남	33	3.3
광주	28	2.8	경북	50	5.0
대전	29	2.9	경남	63	6.3
울산	21	2.1	제주	12	1.2
경기	269	26.9	세종	8	0.8
강원	28	2.8	합계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의 일반현황 및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은 남성 49.6%, 여성 50.4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0대(28.8%)와 30대(24.8%)가 많은 가운데,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약 42.7세인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형태는 대부분 도시지역(동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읍·면·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가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 12.7%, 연립/빌라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 여부는 기혼 59.2%, 미혼(동거, 이혼, 사별 포함) 40.8%이며, 평균 동거가족 수는 본인 포함 약 3.0명인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600만 원 미만이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0만~7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응답자 일반현황

단위: 명, %

성별	빈도	비율	결혼 여부	빈도	비율
남성	496	49.6	기혼	592	59.2
여성	504	50.4	미혼	408	40.8
합계	1,000	100.0	합계	1,000	100.0
연령	빈도	비율	평균 동거가족 수(본인 포함)		
20대	167	16.7	3.0명		
30대	248	24.8	최종학력	빈도	비율
40대	288	28.8	중학교 졸업 이하	8	0.8
50대	188	18.8	고등학교 졸업	190	19.0
60대 이상	109	10.9	대학교 졸업	712	71.2
합계	1,000	100.0	대학원 졸업	90	9.0
거주 지역 형태	빈도	비율	합계	1,000	100.0
도시	910	91.0	월평균 가구소득	빈도	비율
농촌	90	9.0	200만 원 미만	67	6.7
합계	1,000	100.0	200만~300만 원 미만	107	10.7
주택 형태	빈도	비율	300만~400만 원 미만		
아파트	726	72.6	400만~500만 원 미만	140	14.0
단독주택	127	12.7	500만~600만 원 미만	151	15.1
주상복합	18	1.8	600만~700만 원 미만	110	11.0
오피스텔	28	2.8	700만~800만 원 미만	91	9.1
연립/빌라	101	10.1	800만~900만 원 미만	73	7.3
합계	1,000	100.0	900만~1,000만 원 미만	47	4.7
-			1,000만 원 이상	69	6.9
-			합계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2.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등록 실태

2.2.1. 반려동물 양육 현황

- 반려동물 소유자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반려

견만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66.0%이며, 반려묘만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26.3%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7.7%인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 소유자(1,000명)가 양육 중인 반려동물 마릿수는 총 1,335마리로 평균 양육 마릿수는 약 1.3마리이며, 반려견과 반려묘의 비율은 각각 62.8%와 37.2%로 반려견의 수가 반려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려견과 반려견 및 반려묘를 모두 양육 중인 소유자(737명)들이 양육 중인 반려견 마릿수는 총 839마리로 평균 양육 마릿수는 1.1마리이며, 최대 5마리까지 양육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반려묘와 반려견 및 반려묘를 모두 양육 중인 소유자(340명)가 양육 중인 반려묘 마릿수는 총 496마리로의 평균 양육 마릿수는 1.5마리이며, 최대 10마리까지 양육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4-4> 반려동물 종류별 소유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 반려묘 모두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려동물 종류	660	66.0	263	26.3	77	7.7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5>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단위: 마리

구분	반려견(n=737)			반려묘(n=340)			전체(n=1,000)		
	마릿수	평균	최대	마릿수	평균	최대	마릿수	평균	최대
양육 마릿수	839	1.1	5	496	1.5	10	1,335	1.3	1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대상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특성에 따라 반려견 양육 비율이 반려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 소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반려견		반려묘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21	64.0	237	36.0	658	100.0
	여성	418	61.7	259	38.3	677	100.0
연령	20대	146	59.1	101	40.9	247	100.0
	30대	213	59.8	143	40.2	356	100.0
	40대	232	63.7	132	36.3	364	100.0
	50대	153	62.4	92	37.6	245	100.0
	60대 이상	95	77.2	28	22.8	123	100.0
거주 지역 형태	도시	756	64.7	413	35.3	1,169	100.0
	농촌	83	50.0	83	50.0	166	100.0
주택 형태	아파트	598	65.1	320	34.9	918	100.0
	아파트 외	241	57.8	176	42.2	417	100.0
결혼 여부	기혼	495	65.1	265	34.9	760	100.0
	미혼	344	59.8	231	40.2	575	100.0
동거가족 수	1인	94	59.5	64	40.5	158	100.0
	2인	144	55.0	118	45.0	262	100.0
	3인	307	71.1	125	28.9	432	100.0
	4인	234	62.4	141	37.6	375	100.0
	5인 이상	60	55.6	48	44.4	108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3	57.4	121	42.6	284	100.0
	대학교 졸업	592	63.5	341	36.5	933	100.0
	대학원 졸업	84	71.2	34	28.8	11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2	56.5	40	43.5	92	100.0
	200만~300만 원 미만	82	56.9	62	43.1	144	100.0
	300만~400만 원 미만	114	57.9	83	42.1	197	100.0
	400만~500만 원 미만	114	60.6	74	39.4	188	100.0
	500만~600만 원 미만	142	71.7	56	28.3	198	100.0
	600만~700만 원 미만	87	60.4	57	39.6	144	100.0
	700만~800만 원 미만	82	67.8	39	32.2	121	100.0
	800만~900만 원 미만	57	62.6	34	37.4	91	100.0
	900만~1,000만 원 미만	45	72.6	17	27.4	62	100.0
	1,000만 원 이상	64	65.3	34	34.7	98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가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체급 기준에 따른 반려견의 품종 비율은 소형견과 중형견이 각각 74.4%와 23.2%로 나타나 소형견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형견의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³⁰⁾
- 성별의 경우 반려견은 수컷이 56.6%로 암컷 43.4%보다 많고 반려묘는 암컷이 51.4%로 수컷 48.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려견과 반려묘의 평균 나이는 각각 6년과 4년 9개월이며, 평균 양육 기간은 각각 5년 4개월과 4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 중성화수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과 반려묘의 중성화수술 비율은 각각 66.2%와 72.2%로 높게 나타남.

〈표 4-7〉 반려동물 일반현황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려견 품종 (체급 기준)	소형견	624	74.4	-	-	-	-
	중형견	195	23.2				
	대형견	20	2.4				
	합계	839	100.0				
성별	수컷	475	56.6	241	48.6	716	53.6
	암컷	364	43.4	255	51.4	619	46.4
	합계	839	100.0	496	100.0	1,335	100.0
평균 나이		6년		4년 9개월		5년 6개월	
평균 양육 기간		5년 4개월		4년 4개월		5년 1개월	
중성화수술 여부	수술	555	66.2	358	72.2	913	68.4
	미수술	284	33.8	138	27.8	422	31.6
	합계	839	100.0	496	100.0	1,335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30) 반려견의 체급 기준은 소유자가 인식하고 있는 품종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견 기준 몸무게(소형견 10kg 미만, 중형견 10~25kg 미만, 대형견 25kg 이상)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국립축산과학원, 검색일: 2025. 9. 10. 참조).

-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입양 경로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과 반려견 모두 ‘지인을 통한 직접 입양’ 비율이 각각 50.7%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만, 다음으로 반려견은 ‘펫샵(25.6%)’을 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반려묘는 ‘길거리 구조(28.6%)’를 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 반려동물 입양 경로

단위: 마리,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인을 통한 직접 입양(친구/친척 등)	425	50.7	174	35.1	599	44.9
동물병원	72	8.6	35	7.1	107	8.0
펫샵(분양샵)	215	25.6	65	13.1	280	21.0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54	6.4	34	6.9	88	6.6
인터넷 쇼핑몰	2	0.2	7	1.4	9	0.7
온라인 개인 거래(SNS, 온라인 카페 등)	28	3.3	15	3.0	43	3.2
가정 내 번식(자가번식)	18	2.1	18	3.6	36	2.7
생산업자	6	0.7	2	0.4	8	0.6
길거리 구조	14	1.7	142	28.6	156	11.7
기타	5	0.6	4	0.8	9	0.7
합계	839	100.0	496	100.0	1,335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 중 입(분)양 당시 구입비 지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진 비율은 반려견 36.8%, 반려묘 19.4%이며, 이들의 평균 구입비는 반려견 약 57.8만 원, 반려묘 약 45.5만 원으로 반려견의 구입비가 반려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비는 반려견 약 20.3만 원, 반려묘 약 1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포함한 전체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비는 약 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9> 입(분)양 당시 반려동물 구입비 지출 여부

단위: 마리,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출	309	36.8	96	19.4	405	30.3
미지출	530	63.2	400	80.6	930	69.7
합계	839	100.0	496	100.0	1,335	100.0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10> 입(분)양 당시 반려동물 구입비

단위: 만 원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평균 구입비	57.8	45.5	54.9

주: 입(분)양 당시 구입비 지출이 이루어진 반려동물에 대한 금액임.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11> 월평균 반려동물 양육비

단위: 만 원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월평균 양육비	20.3	17.0	19.0

주: 사료비, 의료비, 서비스비 등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임.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2.2. 반려동물 등록 실태

-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에 대한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등록이 이루어진 비율은 반려견 55.2%, 반려묘 24.4%이며, 전체 등록 비율은 43.7%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2〉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등록	463	55.2	121	24.4	584	43.7
미등록	376	44.8	375	75.6	751	56.3
합계	839	100.0	496	100.0	1,335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반려동물 입양 경로별 입(분)양 당시의 동물등록 비율을 살펴보면 반려견은 입양 경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인을 통한 직접 입양’의 경우 48.5%로 나타났으며, ‘펫샵’의 경우 66.0%로 나타남.
 - 반려묘는 입양 경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인을 통한 직접 입양’의 경우 31.6%로 나타났으며, ‘길거리 구조’의 경우 4.2%로 매우 낮게 나타남.

〈표 4-13〉 반려동물 입양 경로별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 비율

단위: 마리,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A)	등록 (B)	비율 (B/A)	전체 (A)	등록 (B)	비율 (B/A)
지인을 통한 직접 입양(친구/친척 등)	425	206	48.5	174	55	31.6
동물병원	72	44	61.1	35	10	28.6
펫샵(분양샵)	215	142	66.0	65	26	40.0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54	38	70.4	34	13	38.2
인터넷 몰	2	-	-	7	3	42.9
온라인 개인 거래(SNS, 온라인 카페 등)	28	12	42.9	15	3	20.0
가정 내 번식(자가번식)	18	12	66.7	18	4	22.2
생산업자	6	3	50.0	2	1	50.0
길거리 구조	14	3	21.4	142	6	4.2
기타	5	3	60.0	4	-	-
합계	839	463	55.2	496	121	24.4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분)양 이후 소유자에 의해 동물 등록이 이루어진 비율은 반려견 39.1%, 반려묘 11.2%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입(분)양 전후를 모두 포함한 등록률은 반려견 72.7%, 반려묘 32.9%로 전체 반려동물 등록률은 57.9%인 것으로 파악됨.³¹⁾

<표 4-14> 입(분)양 이후 동물등록 현황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등록	147	39.1	42	11.2	189	25.2
미등록	229	60.9	333	88.8	562	74.8
합계	376	100.0	375	100.0	751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15> 반려동물 등록률 현황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등록	610	72.7	163	32.9	773	57.9
미등록	229	27.3	333	67.1	562	42.1
합계	839	100.0	496	100.0	1,335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의 특성 및 거주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함.

- 반려견의 체급 기준에 의한 품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품종의 등록률이 70% 이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형견의 등록률이 7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73.9%)과 반

31) 양육 중인 반려견의 현재 나이를 조사한 결과 동물등록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2개월 미만의 반려견 수는 1마리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동물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려묘(36.3%)의 등록률이 농촌지역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61.4%) 및 반려묘(1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육 중인 주택 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에서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73.7%) 및 반려묘(36.6%)의 등록률이 그 외 주택 형태에서 양육되는 반려견(70.1%) 및 반려묘(2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반려견은 수컷(72.8%)과 암컷(72.5%)이 비슷한 수준이며, 반려묘는 암컷(35.3%)의 등록률이 수컷(3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성화수술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반려견은 중성화수술이 이루어진 반려견(81.6%)의 등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묘는 중성화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묘(34.1%)의 등록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6〉 반려동물의 주요 특성별 등록률 현황

단위: 마리,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양육 마릿수 (A)	등록 마릿수 (B)	등록률 (B/A)	양육 마릿수 (A)	등록 마릿수 (B)	등록률 (B/A)
반려견 품종 (체급 기준)	소형견	624	441	70.7	-	
	중형견	195	154	79.0		
	대형견	20	15	75.0		
양육 지역 형태	도시	756	559	73.9	413	150
	농촌	83	51	61.4	83	13
주택 형태	아파트	598	441	73.7	320	117
	아파트 외	241	169	70.1	176	46
성별	수컷	475	346	72.8	241	73
	암컷	364	264	72.5	255	90
중성화수술 여부	수술	555	453	81.6	358	116
	미수술	284	157	55.3	138	47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반려동물 입(분)양 이후 소유자에 의해 동물등록이 이루어진 반려동물의 평균 등록 시기는 반려견 약 2년 1개월, 반려묘 약 8.1개월이며, 반려견의 동물등록 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65.3%인 것으로 나타남.
 - 소유자가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위해 이용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유형은 대부분 동물병원(89.6%)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7> 입(분)양 이후 동물등록 시기

구분	반려견(n=59)	반려묘(n=14)	전체(n=73)
평균 등록 시기	2년 1개월	8.1개월	1년 8개월

주: 입(분)양 이후 소유자가 직접 동물등록을 실시한 반려동물 중 등록 시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유자의 조사 결과임.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18> 반려견 등록 시 동물등록 대행기관 이용 여부

구분	이용		미이용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행기관 이용 여부			
	96	65.3	51	34.7	147	100.0

주: 현재 반려묘의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되어 있어 반려견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19> 반려견 등록 시 이용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유형

구분	단위: 마리, %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법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판매업자	합계
빈도	86	2	4	2	2	96
비율	89.6	2.1	4.1	2.1	2.1	100.0

주: 현재 반려묘의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되어 있어 반려견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현재 동물등록이 이루어진 반려견의 동물등록 방식을 조사한 결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53.3%)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16.2%)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인식표의 경우 현행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용 비율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보다 높은 30.5%로 나타남.

〈표 4-20〉 반려견의 동물등록 방식

구분	단위: 마리,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물등록 방식	325	53.3	99	16.2	186	30.5	610	100.0

주: 현재 반려묘의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되어 있어 반려견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직접 동물등록을 실시한 소유자 중 동물등록 비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동물등록 비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견은 약 3.0만 원, 반려묘는 약 3.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1〉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비용

구분	반려견(n=64)	반려묘(n=15)	단위: 만 원	
			전체(n=79)	비율
동물등록 비용	3.0	3.3	3.1	

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현재까지 동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한 향후 동물등록 의향을 조사한 결과 동물등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60.3%)이 반려묘(3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반려견의 향후 등록방식에 대해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45.7%)보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54.3%)의 선호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소유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2〉 향후 동물등록 의향

단위: 마리, %

구분	반려견		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물등록 의향 있음	138	60.3	126	37.8	264	47.0
동물등록 의향 없음	91	39.7	207	62.2	298	53.0
합계	229	100.0	333	100.0	562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23〉 향후 반려견 등록 시 동물등록 방식

단위: 마리, %

구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물등록 방식	63	45.7	75	54.3	138	100.0

주: 현재 반려묘의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되어 있어 반려견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한편, 입(분)양 이후 현재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양육 중인 반려동물에 대한 미등록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과 반려묘 소유자 모두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 각각 30.3%와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 각각 23.0%와 22.5%로 나타남.

- 이와 함께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절차의 복잡성(14.9%)’과 ‘동물등록 비용의 부담(14.0%)’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반려묘 소유자는 ‘동물등록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15.0%)’과 ‘동물등록 절차의 복잡성(11.1%)’을 높게 응답함.

〈표 4-24〉 반려동물 미등록 이유

구분	반려견(n=210)	반려묘(n=222)	단위: %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	23.0	22.5	
동물등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14.9	11.1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30.3	31.5	
동물등록 비용(수수료)이 부담스럽기 때문	14.0	9.2	
인근에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기 때문	7.1	4.2	
(반려견) 생후 2개월 미만이기 때문	2.4	15.0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거부감 때문	7.8	4.2	
기타	0.5	2.3	
합계	100.0	100.0	

주: 복수응답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1순위 2점/2순위 1점).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3.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관련 인식

2.3.1. 동물등록제 관련 인식

-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 기준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57.9%로 나타났으나, 전혀 모르거나 제도명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42.1%로 높게 나타남.
 - 반려견과 반려묘만을 양육 중인 소유자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소유자 64.2%, 반려묘 소유자 39.2%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양육 중인 소유자의 경우 67.5%가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5〉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모름	46	7.0	35	13.3	1	1.3	82	8.2
제도명만 들어본 적 있음	190	28.8	125	47.5	24	31.2	339	33.9
어느 정도 알고 있음	307	46.5	88	33.5	39	50.6	434	43.4
매우 잘 알고 있음	117	17.7	15	5.7	13	16.9	145	14.5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소유자의 6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반려견과 반려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반려견 소유자(70.9%)가 반려묘 소유자(63.9%)보다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양육하는 경우 67.5%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6〉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필요	7	1.1	7	2.7	-	-	14	1.4
불필요	24	3.6	9	3.4	2	2.6	35	3.5
보통	161	24.4	79	30.0	23	29.9	263	26.3
필요	237	35.9	117	44.5	31	40.2	385	38.5
매우 필요	231	35.0	51	19.4	21	27.3	303	30.3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시행 및 등록률 향상에 따른 주요 부문별 기대효과를 조사한 결과, 모든 부문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 결과가 도출됨.

- 가장 높은 기대효과를 보인 부문은 ‘유실·유기동물 감소(5.44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유자 책임 의식 제고(5.41점)’,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5.39점)’, ‘반려동물 통계기반 구축(5.29점)’, ‘동물 학대 예방(5.2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기대효과를 보인 부문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4.75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7〉 동물등록제 시행 및 등록률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

단위: %, 점

구분	보통							평균
	낮음	1	2	3	4	5	6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9	2.8	6.1	26.3	29.1	23.1	9.7	4.84
(2) 동물 학대 예방	2.4	2.9	5.5	18.2	22.3	29.3	19.4	5.21
(3) 유실유기동물 감소	2.1	2.2	4.5	15.2	22.1	24.3	29.6	5.44
(4)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1.9	1.9	4.2	15.5	24.4	27.9	24.2	5.39
(5) 소유자 책임 의식 제고	2.1	1.7	5.0	14.3	22.7	29.7	24.5	5.41
(6) 공공 안전 및 법 집행 지원	2.3	1.9	6.0	21.6	28.5	27.2	12.5	5.04
(7) 질병 관리 및 공중 보건 안전망 구축	2.2	2.0	6.3	22.6	26.1	28.1	12.7	5.04
(8) 반려동물 통계 기반 구축	1.7	1.5	4.3	17.8	27.8	26.8	20.1	5.29
(9)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	2.1	3.0	7.5	23.3	29.0	23.7	11.4	4.91
(10)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2.8	3.9	7.7	27.9	26.4	21.5	9.8	4.75
(11) 반려동물에 대한 미소유자 인식 개선	2.9	2.6	7.0	26.0	25.6	24.0	11.9	4.88
(12) 정부 정책 수립 효율성 향상	2.3	2.6	5.4	23.9	29.8	24.5	11.5	4.96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 중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반려묘만 양육 중인 소유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양육 중인 소유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3.2%로 나타나 단일 종류를 양육하는 소유자에 비해 동물등록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4-28〉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모름	275	41.7	104	39.5	11	14.3	390	39.0
사업명만 들어본 적 있음	244	37.0	91	34.6	25	32.5	360	36.0
어느 정도 알고 있음	125	18.9	61	23.2	33	42.8	219	21.9
매우 잘 알고 있음	16	2.4	7	2.7	8	10.4	31	3.1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소유자의 6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반려견과 반려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오히려 반려견 소유자(68.5%)가 반려묘 소유자(54.0%)보다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양육하는 경우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9〉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불필요	9	1.4	5	1.9	-	-	14	1.4
불필요	28	4.2	24	9.1	3	3.9	55	5.5
보통	171	25.9	92	35.0	16	20.8	279	27.9
필요	312	47.3	103	39.2	41	53.2	456	45.6
매우 필요	140	21.2	39	14.8	17	22.1	196	19.6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의 8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양육 종류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표 4-30〉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반대	-	-	1	0.7	-	-	1	0.2
반대	4	0.9	-	-	-	-	4	0.6
보통	31	6.9	22	15.5	10	17.2	63	9.7
찬성	253	56.0	78	54.9	31	53.4	362	55.5
매우 찬성	164	36.3	41	28.9	17	29.3	222	34.0
합계	452	100.0	142	100.0	58	100.0	652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한편, 반려동물 입양 전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통한 별도의 사전교육 이수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의 18.2%만이 입양 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1〉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험 있음	121	18.3	38	14.4	23	29.9	182	18.2
경험 없음	539	81.7	225	85.6	54	70.1	818	81.8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특히,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경험 여부에 따른 등록동물 보유 소유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 이수자들의 등록동물 보유율은 80.8%로 나타난 반면, 미이수자들의 등록동물 보유율은 59.8%로 나타나 동물등록에 있어 입양 전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표 4-32>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등록동물 보유율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등록 소유자	147	80.8	489	59.8	636	63.6
미등록 소유자	35	19.2	329	40.2	364	36.4
합계	182	100.0	818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입양 전 교육을 받은 전체 소유자 중 교육을 통해 동물등록제 관련 정보 습득 및 동물등록의 필요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로 높게 나타나 동물등록 시행에 대한 입양 전 교육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33>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통한 긍정적 효과 수준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1	0.8	1	2.6	-	-	2	1.1
낮음	6	5.0	5	13.2	-	-	11	6.0
보통	51	42.1	11	28.9	7	30.4	69	37.9
높음	45	37.2	16	42.1	12	52.2	73	40.1
매우 높음	18	14.9	5	13.2	4	17.4	27	14.8
합계	121	100.0	38	100.0	23	100.0	182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또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소유자의 6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4〉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반대	6	0.9	4	1.5	-	-	10	1.0
반대	28	4.2	9	3.4	1	1.3	38	3.8
보통	182	27.6	87	33.1	22	28.6	291	29.1
찬성	308	46.7	113	43.0	37	48.1	458	45.8
매우 찬성	136	20.6	50	19.0	17	22.1	203	20.3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3.2. 동물등록 관련 인식

-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된 소유자 중 양육 중인 반려동물을 입양한 이후 소유자 본인의 인적 사항 또는 반려동물 관련 정보 변경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의 28.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0.2%가 변경 신고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5〉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정보 변경에 대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험 있음	129	26.5	28	30.8	21	35.6	178	28.0
경험 없음	357	73.5	63	69.2	38	64.4	458	72.0
합계	486	100.0	91	100.0	59	100.0	636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36〉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변경 신고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고	87	67.4	20	71.4	18	85.7	125	70.2
미신고	42	32.6	8	28.6	3	14.3	53	29.8
합계	129	100.0	28	100.0	21	100.0	178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반려동물 소유자 중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을 분실하였다가 다시 찾은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소유자의 14.0%인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이 반려동물 분실 후 다시 찾은 평균 기간은 약 6.2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소유자의 현재 동물등록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등록동물은 약 5일, 미등록 동물은 약 8.7일로 나타나 동물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약 3.7일 빠른 것으로 나타남.

〈표 4-37〉 반려동물 분실 후 다시 찾은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험 있음	78	11.8	40	15.2	22	28.6	140	14.0
경험 없음	582	88.2	223	84.8	55	71.4	860	86.0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38〉 반려동물 분실 후 다시 찾은 평균 기간

단위: 일

구분	등록동물(n=95)	미등록 동물(n=45)	전체(n=140)
반려동물 분실 후 평균 반환 기간	5.0	8.7	6.2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된 소유자 중 양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등록 말소에 대한 변경 신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의 82.9%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9〉 반려동물 사망 후 등록 말소 신고 의향 여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번호	비율	번호	비율	번호	비율	번호	비율
의향 있음	402	82.7	75	82.4	50	84.7	527	82.9
의향 없음	84	17.3	16	17.6	9	15.3	109	17.1
합계	486	100.0	91	100.0	59	100.0	636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한편, 유실·유기동물 방지 및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48.0%)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1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동물등록 방식 일원화의 논의 대상인 반려견 소유자의 경우 찬성 비율이 48.3%로 나타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40〉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번호	비율	번호	비율	번호	비율	번호	비율
매우 반대	20	3.0	11	4.2	-	-	31	3.1
반대	73	11.1	34	12.9	5	6.5	112	11.2
보통	248	37.6	98	37.3	31	40.3	377	37.7
찬성	233	35.3	98	37.3	33	42.9	364	36.4
매우 찬성	86	13.0	22	8.4	8	10.4	116	11.6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반려견 소유자와 반려견 및 반려묘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존 동물등록 방식(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려견 대상 비문(코주름) 등록방식에 대한 인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인 것으로 나타남.
- 반려견 비문 등록방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36.9%가 높을 것이라 고 예상하였으나, 비문 등록방식이 도입될 경우 활용 의향에 대해서는 소유자 의 51.7%가 활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1〉 반려견 비문 등록방식에 대한 견해

구분	인지 수준		구분	정확성		구분	활용 의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전혀 모름	204	27.7	매우 낮음	14	1.9	매우 낮음	15	2.0		
명칭만 들어본 적 있음	264	35.8	낮음	92	12.5	낮음	70	9.5		
어느 정도 알고 있음	232	31.5	보통	359	48.7	보통	271	36.8		
매우 잘 알고 있음	37	5.0	높음	238	32.3	높음	290	39.4		
합계	737	100.0	매우 높음	34	4.6	매우 높음	91	12.3		
			합계	737	100.0	합계	737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주요 선진국과 같이 일정 기간마다 소유자와 등록동물의 정보를 확인·갱신하는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의 57.9%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물등록 갱신제’에 찬성하는 소유자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동물등록 갱신주기에 대해서는 전체 소유자 기준 ‘3년’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년’ 27.8%, ‘5년 이상’ 13.5%, ‘1년’ 13.0%, ‘4년’ 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42〉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반대	11	1.7	7	2.7	2	2.6	20	2.0
반대	59	8.9	25	9.5	4	5.2	88	8.8
보통	202	30.6	89	33.8	22	28.6	313	31.3
찬성	299	45.3	111	42.2	38	49.4	448	44.8
매우 찬성	89	13.5	31	11.8	11	14.3	131	13.1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표 4-43〉 동물등록 갱신주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년	42	10.8	26	18.3	7	14.3	75	13.0
2년	108	27.8	41	28.9	12	24.5	161	27.8
3년	159	41.0	45	31.7	15	30.6	219	37.8
4년	24	6.2	13	9.2	9	18.4	46	7.9
5년 이상	55	14.2	17	12.0	6	12.2	78	13.5
합계	388	100.0	142	100.0	49	100.0	579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이와 함께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진국과 같이 등록 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일정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도 찬성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의 5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4〉 동물등록 강신 비용 발생 시 찬성 의향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반대	10	2.6	3	2.1	-	-	13	2.2
반대	29	7.5	17	12.0	6	12.2	52	9.0
보통	127	32.7	48	33.8	19	38.8	194	33.5
찬성	182	46.9	63	44.4	16	32.7	261	45.1
매우 찬성	40	10.3	11	7.7	8	16.3	59	10.2
합계	388	100.0	142	100.0	49	100.0	579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전체 소유자의 비율은 3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반려견과 반려묘만을 양육 중인 소유자보다 모두 양육 중인 소유자의 인지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5〉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지 수준

단위: 명, %

구분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반려묘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모름	167	25.3	99	37.6	8	10.4	274	27.4
명칭만 들어본 적 있음	244	37.0	83	31.6	27	35.1	354	35.4
어느 정도 알고 있음	214	32.4	74	28.1	34	44.2	322	32.2
매우 잘 알고 있음	35	5.3	7	2.7	8	10.4	50	5.0
합계	660	100.0	263	100.0	77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등록동물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 소유자의 52.7%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7.4%로 나타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와 미등록 소유자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등록 소유자의 찬성 비율(58.3%)이 미등록 소유자의 찬성 비율(42.9%)보다 높게 나타나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4-46〉 등록동물 대상 차별화된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등록 소유자		미등록 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반대	7	1.1	12	3.3	19	1.9
반대	23	3.6	32	8.8	55	5.5
보통	235	36.9	164	45.1	399	39.9
찬성	278	43.7	135	37.1	413	41.3
매우 찬성	93	14.6	21	5.8	114	11.4
합계	636	100.0	364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 소유자 기준 가장 높게 나타난 사항은 ‘등록 절차 간소화(16.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등록비용 지원(15.0%)’,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10.9%)’, ‘등록 의무화에 대한 벌칙 기준 강화(10.5%)’ 및 ‘등록동물 대상 의료비 지원(10.5%)’, ‘입양 전 교육 의무화(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유자의 등록동물을 보유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등록 절차 간소화’와 ‘등록비용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인 상위 항목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다음으로 등록 소유자는 ‘등록 의무화에 대한 벌칙 기준 강화’를 중요시하는 반면, 미등록 소유자는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7〉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

구분	등록 소유자 (n=636)	미등록 소유자 (n=364)	전체 (n=1,000)
등록 절차 간소화	14.6	19.2	16.3
등록비용 지원	13.6	17.5	15.0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	10.4	11.7	10.9
등록 의무화에 대한 벌칙 기준 강화	12.0	7.8	10.5
등록동물 대상 의료비 지원	10.4	10.6	10.5
입양 전 교육 의무화	10.9	8.7	10.1
미등록 소유자 단속 강화	8.9	5.5	7.7
등록동물 대상 펫보험 가입 혜택	4.1	3.7	4.0
취약지역 및 계층 대상 등록 서비스 확대	3.3	2.9	3.2
등록동물 전용 이용시설 확대	3.5	2.7	3.2
등록동물 대상 사료·용품 구입비 할인	2.2	3.4	2.6
등록동물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2.4	1.9	2.2
등록동물 대상 관련 서비스 이용료 할인	1.9	2.7	2.2
등록동물 대상 보호 및 안전관리서비스 지원	1.7	1.6	1.7
기타	0.1	0.1	0.1
합계	100.0	100.0	100.0

주: 복수응답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1순위 3점/2순위 2점/3순위 1점).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2.4. 「동물보호법」내 동물등록 규정 관련 인식

○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도와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함.

- 조사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주요 동물등록 관련 세부 규정을 추출하여 제시한 후 각 세부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함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7점 척도로 조사함.

〈표 4-48〉 「동물보호법」 내 주요 동물등록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1) 반려견 등록 월령	생후 2개월 이상
(2) 동물등록 제외지역	도서 지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부재 지역
(3) 맹견 등록	모든 맹견 동물등록 의무화
(4) 신규 등록 신청 기간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5) 등록동물 분실신고	등록동물 분실신고 의무화
(6) 등록동물 분실신고 기간	분실한 날부터 10일 이내
(7)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 신고 의무화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8)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 신고 의무화 (분실 후 반환, 해외 양육, 동물 사망, 무선식별장치 변경 등)
(9) 등록 변경 신고 기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10) 등록 절차	소유자 → 동물등록 대행기관 → 지자체
(11) 등록방식_내장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가능
(12) 등록방식_외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가능
(13) 등록방식_인식표	현재 일반 인식표 사용 불가
(14) 등록 수수료_내장형	1만 원
(15) 등록 수수료_외장형	3천 원
(16) 미등록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17) 변경 신고 미이행 과태료	50만 원 이하

자료: 연구진 작성.

○ 전체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수준은 규정에 따라 41.3~68.0%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높지 않은 수준임.

- 인지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맹견 등록(68.0%)’ 관련 규정이며, 다음으로 ‘등록방식_내장형(64.5%)’, ‘동물등록 분실신고(61.9%)’, ‘소유자 등록 사항 변경 신고(60.8%)’ 관련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인지 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동물등록 제외지역(41.3%)’ 관련 규정이며, 다음으로 ‘등록동물 분실신고 기간(48.2%)’, ‘신규 등록 신청 기간(49.1%)’ 및 ‘미등록 과태료(49.1%)’ 관련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물등록 관련 세부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모든 규정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맹견 등록(5.43점)’ 관련 규정에 대한 적절성이 가장 높고 ‘동물등록 제외지역(4.40점)’ 관련 규정에 대한 적절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9〉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점

구분	인지 수준	부적절 보통 적절							평균
		1	2	3	4	5	6	7	
(1) 반려견 등록 월령	59.5	2.9	2.8	5.6	32.2	24.6	22.4	9.5	4.78
(2) 동물등록 제외지역	41.3	3.4	4.8	11.1	36.6	23.2	15.2	5.7	4.40
(3) 맹견 등록	68.0	0.8	2.0	4.9	20.0	20.1	22.2	30.0	5.43
(4) 신규 등록 신청 기간	49.1	1.4	2.4	7.8	31.6	26.8	19.1	10.9	4.81
(5) 등록동물 분실신고	61.9	0.9	1.4	6.5	24.2	27.1	21.5	18.4	5.13
(6) 등록동물 분실신고 기간	48.2	1.5	2.9	8.8	29.3	24.3	19.3	13.9	4.86
(7)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60.8	0.9	1.5	6.8	25.2	26.0	23.8	15.8	5.09
(8)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신고	58.8	0.8	1.8	6.1	24.6	30.9	23.2	12.6	5.03
(9) 등록 변경 신고 기간	50.5	1.0	2.1	8.1	29.7	27.5	22.0	9.6	4.85
(10) 등록 절차	52.9	1.7	2.9	8.3	30.6	23.2	22.9	10.4	4.81
(11) 등록방식_내장형	64.5	1.6	2.1	9.2	29.5	25.1	19.9	12.6	4.85
(12) 등록방식_외장형	59.9	1.9	3.1	10.2	29.5	26.2	20.2	8.9	4.71
(13) 등록방식_인식표	50.8	2.5	3.4	8.3	35.5	22.9	19.8	8.6	4.64
(14) 등록 수수료_내장형	53.8	3.1	3.5	8.4	32.8	23.9	17.9	10.4	4.66
(15) 등록 수수료_외장형	52.2	2.7	4.1	8.2	30.6	24.4	20.1	9.9	4.70
(16) 미등록 과태료	49.1	4.6	5.2	9.5	28.4	23.1	17.4	11.8	4.60
(17) 변경 신고 미이행 과태료	45.5	4.7	4.4	11.7	30.6	24.8	13.2	10.6	4.48

주 1) 전체 반려동물 소유자 1,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임.

2) 기간 관련 규정[(1), (4), (6), (9)] 항목은 ‘1. 짧음 ~ 4. 보통 ~ 7. 깊’을 의미함.

3) 금액 관련 규정[(14), (15), (16), (17)] 항목은 ‘1. 낮음 ~ 4. 보통 ~ 7. 높음’을 의미함.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한편,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등록 관련 규정은 주로 동물등록이 의무화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려견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으로 분석함.
- 조사 결과 반려견 소유자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은 규정에 따라 43.6~70.3%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높지 않은 수준임.
 - 인지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맹견 등록(70.3%)’ 관련 규정이며, 다음으로 ‘등록방식_내장형(67.4%)’, ‘등록방식_외장형(65.3%)’, ‘소유자 등록 사항 변경 신고(65.1%)’, ‘동물등록 분실신고(64.0%)’ 관련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인지 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동물등록 제외지역(43.6%)’ 관련 규정이며, 다음으로 ‘변경 신고 미이행 과태료(47.5%)’, ‘등록동물 분실신고 기간(49.3%)’ 관련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물등록 관련 세부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반려견 소유자 역시 모든 규정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 세부 규정의 적절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맹견 등록(5.42점)’ 관련 규정이며, 다음으로 ‘등록동물 분실신고(5.17점)’,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5.13점)’,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신고(5.0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세부 규정의 적절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동물등록 제외지역(4.42점)’이며, 다음으로 ‘변경 신고 미이행 과태료(4.55점)’, ‘미등록 과태료(4.66점)’, ‘등록방식_인식표(4.67점)’, ‘등록 수수료_내장형(4.69점)’ 관련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과태료와 등록방식 관련 규정의 적절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함.

〈표 4-50〉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반려견)

단위: %, 점

구분	인지 여부	부적절 보통 적절							평균
		1	2	3	4	5	6	7	
(1) 반려견 등록 월령	63.4	2.3	3.1	4.8	30.8	25.8	22.8	10.5	4.85
(2) 동물등록 제외지역	43.6	3.1	4.8	10.6	36.6	23.9	15.7	5.3	4.42
(3) 맹견 등록	70.3	0.7	2.0	4.3	21.0	20.9	21.4	29.6	5.42
(4) 신규 등록 신청 기간	51.6	1.0	2.9	6.8	31.8	26.6	19.4	11.7	4.85
(5) 등록동물 분실신고	64.0	0.8	1.5	6.0	22.9	28.1	21.4	19.3	5.17
(6) 등록동물 분실신고 기간	49.3	1.4	2.4	9.2	29.7	23.6	18.6	15.1	4.88
(7)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65.1	0.7	1.0	6.8	25.0	25.5	24.8	16.3	5.13
(8)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신고	62.3	0.7	2.3	5.8	23.1	31.3	23.3	13.4	5.06
(9) 등록 변경 신고 기간	53.3	1.0	1.6	8.4	29.0	28.2	21.6	10.2	4.87
(10) 등록 절차	57.0	1.6	2.4	7.8	30.5	23.1	23.3	11.1	4.85
(11) 등록방식_내장형	67.4	1.4	1.5	9.2	28.2	26.3	19.8	13.6	4.90
(12) 등록방식_외장형	65.3	1.4	2.9	10.0	28.0	27.4	20.6	9.8	4.78
(13) 등록방식_인식표	54.0	2.2	3.5	8.4	34.5	23.3	19.0	9.1	4.67
(14) 등록 수수료_내장형	56.9	2.9	3.3	8.6	32.2	24.7	17.4	11.1	4.69
(15) 등록 수수료_외장형	54.7	2.2	4.2	7.9	30.3	24.6	20.4	10.6	4.74
(16) 미등록 과태료	52.4	3.9	4.6	9.2	28.6	23.1	18.5	12.1	4.66
(17) 변경 신고 미이행 과태료	47.5	3.4	4.3	12.5	29.4	25.6	13.2	11.5	4.55

주 1) 반려견 소유자 및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양육하고 있는 소유자 737명에 대한 조사 결과임.

2) 인지 여부는 '① 인지'와 '② 미인지' 중 '① 인지'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3) 기간 관련 규정[(1), (4), (6), (9)] 항목은 '1. 짧음 ~ 4. 보통 ~ 7. 깊'을 의미함.

4) 금액 관련 규정[(14), (15), (16), (17)] 항목은 '1. 낮음 ~ 4. 보통 ~ 7. 높음'을 의미함.

자료: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미등록, 분실 미신고,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 동물등록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소유자의 비율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소유자의 등록동물을 보유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등록 소유자와 미등록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 경험 비율은 각각 8.0%와 3.6%로 나타나 오히려 등록 소유자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51〉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등록 소유자		미등록 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험 있음	51	8.0	13	3.6	64	6.4
경험 없음	585	92.0	351	96.4	936	93.6
합계	636	100.0	364	100.0	1,000	100.0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 과태료를 부과받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내용별 건수를 조사한 결과 부과 건수는 총 79건으로 ‘분실 미신고(51.9%)’에 의한 건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27.8%)’, ‘미등록(13.9%)’,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등록 소유자와 미등록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각각 62건과 17건이며, 특히 미등록 소유자의 미등록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에 불과함.

〈표 4-52〉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단위: 건, %

구분	등록 소유자		미등록 소유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미등록	8	12.9	3	17.6	11	13.9
분실 미신고	33	53.2	8	47.1	41	51.9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17	27.4	5	29.4	22	27.8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4	6.5	1	5.9	5	6.3
합계	62	100.0	17	100.0	79	100.0

주: 과태료를 부과받은 소유자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3. 시사점

3.1.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 및 등록대상 관련 규정 강화 필요

- 반려동물 등록률 조사 결과 반려견과 반려묘의 등록률은 각각 72.7%와 32.9%로 나타났으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된 2014년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반려묘의 경우 2018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 202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음.
 - 특히, 도시지역(반려견 73.9%, 반려묘 36.3%)과 농촌지역(반려견 61.4%, 반려묘 15.7%) 간 등록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향후 동물등록 의향을 조사한 결과 동물등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려견 60.3%, 반려묘 37.8%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동물등록률 향상의 재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체 소유자의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89.5%(반려묘 83.8%)로 높게 나타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려묘가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될 경우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반려동물 입(분)양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입(분)양 당시의 동물등록률은 반려견 55.2%, 반려묘 24.4%로 낮게 나타남.
 - 특히, 반려견의 경우 펫샵을 통한 입양 비율이 25.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 비율은 66.0%에 불과함.

- 이는 「동물보호법」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에 명시된 영업업자의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관련 의무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입(분)양 이후 소유자에 의해 동물등록이 이루어진 비율 역시 반려견 39.1%, 반려묘 11.2%로 낮게 나타나 동물등록제 본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반려견의 경우, 평균 동물등록 시기가 약 2년 1개월인 것으로 나타나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월령 2개월 이상)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노력과 함께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반려견에 대한 영업업체 및 소유자의 동물등록 관련 규정 준수 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함께 등록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에 대하여 등록 소유자와 미등록 소유자 모두 찬성 비율(각각 58.3%, 42.9%)이 반대 비율(각각 4.7%, 12.1%) 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동물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3.2. 동물등록 방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반려견의 동물등록 방식을 조사한 결과 현행 등록방식으로 허용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비율이 각각 53.3%와 16.2%로 나타남.
 - 그러나 현행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된 인식표의 비율도 30.5%로 높게 나타나 반려견의 등록방식 관련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향후 반려견 등록 의향이 있는 소유자가 선호하는 등록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45.7%)보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54.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일원화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일원화에 대한 찬성 비율은 전체 소유자의 경우 48.0%이며, 논의 대상인 반려견 소유자의 찬성 비율도 48.3%로 나타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려견 대상 비문 등록방식에 대한 인지도는 36.5%,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는 36.9%로 낮게 나타났으나, 도입 시 활용 의향 비율은 이보다 높은 51.7%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등록방식의 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신규 동물등록 방식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3.3.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필요

-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 수준은 57.9%(반려견 64.2%, 반려묘 39.2%, 모두 양육 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8.8%(반려견 70.9%, 반려묘 63.9%, 모두 양육 67.5%)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동물등록제 시행 및 등록률 향상에 대한 주요 부문별 기대효과를 조사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보통’ 이상(7점 척도 기준 4.75~5.44점)의 응답 결

과가 도출되었으나, 동물등록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실제 미등록 소유자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반려견과 반려묘 소유자 모두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반려견 30.3%, 반려묘 31.5%)과 ‘동물등록제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반려견 23.0%, 반려묘 22.5%)을 지적한 바와 같이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동물등록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분실 후 다시 찾은 평균 기간을 조사한 결과 등록동물이 미등록 동물보다 약 3.7일 빠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동물등록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유실·유기동물 감소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와 입양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66.1%)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에 대한 이수 비율 확대 또는 의무화 추진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³²⁾

32) 김동훈·홍재호(2025)의 연구 결과에서도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한 소유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소유자보다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5.0~5.1% 높은 것으로 분석됨.

3.4.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및 단속 강화 필요

- 「동물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동물등록 관련 의무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적절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17개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 범위는 41.3~68.0%(인지 또는 미 인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성 수준 범위는 4.40~5.43점(7점 척도 기준)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와 일부 등록 관련 규정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소유자 및 등록동물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인지 수준은 각각 60.8%와 58.8% 수준이며, 적절성 수준은 각각 5.09점과 5.0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에서도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의 소유자 또는 반려견 관련 정보 변경에 따라 실제 변경 신고가 이루어진 비율은 6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양육 중인 반려견 사망 후 등록 말소 신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7%로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의무화를 고려한다면 인식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등록방식 중 현재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에 일반 인식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도 5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식표 활용 비율(30.5%)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조사 결과 반려동물 미등록, 분실 미신고,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동물등록 관련 규정 위반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소유자의 비율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미등록 및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각각 49.1%와 45.5%에 불과하다는 점과 연계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등록 관련 의무 규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 강화와 관련 규정 위반 시의 단속 강화를 통해 동물등록률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5

해외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시사점

1. 미국³³⁾

1.1. 동물등록제 연혁 및 일반현황

-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써 2024년 기준 미국 내 가구의 약 50%가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남.³⁴⁾
- 이에 따라 ①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② 유실·유기동물 소유자 확인 및 반환, ③ 지방정부 재정 확보(수수료 기반), ④ 동물복지·입양사업 등 공공 예산 재투자 등을 목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33) 미국의 동물등록제 연혁 및 일반현황과 주요 지역의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미국의 주(State)별 동물등록 관련 요건은 <부록 2>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함.

34) 뉴스펫(2025. 5. 5.), “美 가구 50%, 반려견·반려묘 키운다”.

○ 미국의 동물등록제 관련 정책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개 등록증은 1853년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스에서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³⁵⁾
- 1894년 뉴욕주에서 미국 최초의 공식적인 ‘Dog Licence Law’가 채택되었으며, 매년 갱신, 메탈 태그 부착, 미등록 시 압수 등의 관리체계가 명문화됨.³⁶⁾
- 1900년대에 들어서며 주요 도시에서 등록 수수료 부과, 태그 상시 부착, 미등록 벌금 부과 등 동물등록 체계가 확산되기 시작함.³⁷⁾
- 이후 1966년 연방 차원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AWA)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소유자에 의한 등록 법안이 아닌 연구, 교육, 전시, 운송 및 판매업자에 의한 동물 취급 관련 규제 법안임.
- 초기 AWA는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주로 연구시설로 판매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절도 및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됨.³⁸⁾

○ 현재 미국은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주(State)와 지자체(County/City) 단위의 분권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동물등록 관련 요건 및 기준은 주 정부 차원에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등록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음.

35) ANIMAL CONTROL SERVICES(<https://www.vacs.ca/dog-licensing/history-dog-licensing?>), 검색일: 2025. 8. 4.

36) NYC DEPARTMENT OF RECORDS & INFORMATION SERVICES(<https://archives.nyc/blog/2022/5/27/dog-licenses-in-the-old-town-records>), 검색일: 2025. 8. 4.

37) St. Louis Park Historical Society(<https://slphistory.org/dogs/>), 검색일: 2025. 8. 4.

38) 미국 의회 공식 입법 정보 사이트(<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7179>), 검색일: 2025. 8. 4.

- 주요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개이며, 대부분 주와 지방 정부에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반면 고양이에 대해서는 일부 주와 도시를 중심으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음.
 - 주 단위에서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지역은 로드아일랜드가 유일하며, 이 외 일부 도시에서는 도시 단위의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³⁹⁾
-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동물등록 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성화수술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등록갱신제를 통해 등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0일 이상 동물을 보호·보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생후 4개월령 이상의 개 한 마리당 연간 8.5달러의 면허세(License tax)를 납부해야 함.
 - 이때 중성화수술을 받았거나 수의사가 번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간 3.5달러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면허세를 납부하면 담당 부서는 면허증과 함께 고유번호가 기재된 금속 태그를 발급함.⁴⁰⁾
 - 면허증이 만료되는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만료일에 맞춰 새로 발급해야 함. 만약 면허증 갱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세의 2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동물보호위원회(Board of Animal Services Commissioners)가 결정하고 시의회가 승인한 기타 금액을 기타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함.⁴¹⁾

39)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https://www.animallaw.info/article/detailed-discussion-state-cat-laws>), 검색일: 2025. 8. 4.

40) 금속 태그에는 “L.A. Dog License”라는 문구가 새겨짐.

41) American Legal Publishing(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los_angeles/latest/

○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 양육, 관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개의 월령이 4개월 이상이 된 날 또는 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세는 1년 50달러, 2년 95달러, 3년 140달러 등 기간마다 상이하며, 증성화수술을 한 경우에는 1년 20달러, 2년 30달러, 3년 40달러로 감면되고 소유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0% 할인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⁴²⁾
- 만약 면허를 기한 내에 취득하거나 만료일로부터 갱신하지 않으면 25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면허세와 함께 납부해야 함.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함께 면허세를 납부하면 유효기간, 면허세 납부일자, 소유자 정보, 동물정보, 면허 번호, 증성화수술 여부 등이 기재된 증명서와 금속 태그를 발급받게 됨.⁴³⁾
- 금속 태그는 반드시 목걸이 등에 부착해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여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또한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 또는 행정위반 과태료 75달러와 연체료 25달러가 부과됨.⁴⁴⁾

○ 뉴욕에서는 개의 소유·양육·보호·입양·구매·돌봄 등과 관련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함. 다만, 동물보호소(Animal Shelter)에서 기르는 개 또는 동물구조단체(Animal Rescue Group)에서 6개월 미만 동안 보호하는 개에 대해서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lamc/0-0-0-136628), 검색일: 2025. 8. 7.

42) 3년 면허는 개가 12개월 이상임을 증명해야 발급이 이루어짐.

43) 금속 태그에는 “San Francisco Dog License”라는 문구가 새겨짐.

44) American Legal Publishing(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san_francisco/latest/sf_health/0-0-0-236), 검색일: 2025. 8. 7.

- 면허세의 경우 중성화하지 않은 개는 연간 34달러이며, 중성화한 개는 연간 8.5달러임.
- 면허증은 1~5년 기간 중 선택하여 신규 발급 또는 갱신할 수 있으며,⁴⁵⁾ 기간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⁴⁶⁾
- 만약 소유자가 펫샵이나 동물구조단체로부터 개를 구매 또는 입양할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 이식을 필수로 하고 있음.⁴⁷⁾
-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5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 태그를 목줄에 부착하지 않고 개를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올 경우 2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됨.⁴⁸⁾

○ 휴스턴에서는 4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면허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음.

- 면허증 발급 시 내장형 마이크로칩 이식이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4마리 이상의 개, 4마리 이상의 고양이, 개 3마리와 고양이 3마리 이상을 소유·양육·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⁴⁹⁾
- 면허 수수료는 중성화하지 않은 동물은 연간 60달러, 중성화한 동물은 연간 20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65세 이상이고 중성화한 동물에 대해서는 연간 2달러를 부과하고 있음.⁵⁰⁾

45) NYC(<https://www.nyc.gov/site/doh/services/dog-licenses.page>), 검색일: 2025. 8. 7.

46) 뉴욕시는 생후 4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47) American Legal Publishing(<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newyorkcity/latest/NYCAadmin/0-0-0-29356>), 검색일: 2025. 8. 7.

48) American Legal Publishing(<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newyorkcity/latest/NYCRules/0-0-0-136887>), 검색일: 2025. 8. 7.

49) municode(https://library.municode.com/tx/houston/codes/code_of_ordinances?nodeId=COOR_CH6ANFO), 검색일: 2025. 8. 7.

- 내장형 마이크로칩 미이식, 등록 미이행, 광견병 예방접종 미이행 등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지역 내 일반벌칙으로 처벌되며, 1건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⁵¹⁾
- 보스턴에서는 매사추세츠 주법에 의해⁵²⁾ 6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매년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⁵³⁾
- 면허 수수료는 중성화하지 않은 개는 연간 30달러, 중성화한 개는 연간 15 달러이며, 소유자가 70세 이상이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⁵⁴⁾
 - 면허증 발급 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증과 함께 발급받은 태그를 목줄에 부착해야 함. 또한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⁵⁵⁾

50) HoustonPaws(<https://www.houstonpaws.com/houston-pet-license-info>), 검색일: 2025. 8. 12.

51) municode(https://library.municode.com/tx/houston/codes/code_of_ordinances?nodeId=COOR_CH1GEPR_S1-6GEPECOVILIREET), 검색일: 2025. 8. 12.

52) Massachusetts General Law(<https://law.justia.com/codes/massachusetts/part-i/title-xx/chapter-140/section-137/>), 검색일: 2025. 8. 12.

53) City of Boston(<https://www.boston.gov/departments/animal-care-and-control/rules-and-regulations-owning-pet>), 검색일: 2025. 8. 12.

54) American Legal Publishing(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boston/latest/boston_ma/0-0-0-14324), 검색일: 2025. 8. 12.

55) City of Boston(<https://www.boston.gov/departments/animal-care-and-control/how-I-license-your-dog>), 검색일: 2025. 8. 12.

〈표 5-1〉 미국 주요 지역의 동물등록 관련 규정

구분		주요 규정
로스앤젤레스	대상	- 4개월령 이상의 개
	면허 기간	- 1~3년
	수수료	- 기본: \$8.5/년 - 중성화: \$3.5/년
	벌칙·과태료	- 간신기한 45일 내 미납 시 등록세의 25% 연체료 또는 별도 결정액 - 연체료 외 민사 또는 형사 처벌
샌프란시스코	대상	- 4개월령 이상의 개
	면허 기간	- 1~3년
	수수료	- 기본: \$50/1년, \$95/2년, \$140/3년 - 중성화: \$20/1년, \$30/2년, \$40/3년 - 65세 이상 소유자: 50% 할인
	벌칙·과태료	- 미취득·미갱신 시 \$25 연체료(면허세와 함께 납부) - 태그 미착용: 경범죄 \$500 이하 벌금 - 미등록: \$100 벌금 또는 행정 과태료 \$75 + 연체료 \$25
뉴욕	대상	- 모든 개(단, 보호소 보유 및 구조단체 6개월 미만 보호는 면제)
	면허 기간	- 1~5년
	수수료	- 기본: \$34/년 - 중성화: \$8.5/년
	벌칙·과태료	- 미등록: \$500 과태료 - 태그 미착용: \$200 과태료
	기타	- 펫샵·구조단체에서 구매·입양 시 마이크로칩 의무
휴斯顿	대상	- 4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
	면허 기간	- 연 1회
	수수료	- 기본: \$60/년 - 중성화: \$20/년 - 65세 이상 소유자 및 중성화: \$2/년
	벌칙·과태료	- 일반벌칙: 1건당 최대 \$500
	기타	- 내장형 마이크로칩 이식 - 개 4마리 이상, 고양이 4마리 이상 또는 개 3마리 + 고양이 3마리 초과 양육 금지
보스턴	대상	- 6개월령 이상의 개
	면허 기간	- 연 1회
	수수료	- 기본: \$30/년 - 중성화: \$15/년 - 70세 이상 소유자: 무료
	벌칙·과태료	- 무면허 \$50 벌금 - 일반벌칙: 건당 \$10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영국

- 영국은 2006년 「Animal Welfare Act 2006」를 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Animal Welfare Act 2006」은 영국 동물보호 정책의 핵심이 되는 법률이며, 동물에 대한 ‘적극적 돌봄’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영국 최초의 법안이라 할 수 있음.
- 2015년 영국 반려견 마이크로칩 이식 규정인 「The Microchipping of Dogs (England) Regulations 2015」가 제정됨에 따라 2016년 4월 6일부터 반려견 등록에 대한 의무화가 시행됨.
 - 규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된 개의 개체 수를 늘려 유실·유기견이 소유자와 재결합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모든 반려견은 생후 8주가 되기 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연락처와 등록번호가 새겨진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이와 함께 이식된 정보는 승인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함.⁵⁶⁾
 - 반려견 또는 반려묘에게 삽입되는 모든 마이크로칩은 제조업체 코드가 포함된 고유번호가 있어야 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마이크로칩 표준 중 ISO 표준을 준수해야 함.
 - 미등록 시 £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다만, 일부 활동견이나 병든 반려견은 의무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6)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3/468/body/made>), 검색일: 2025. 8. 20.

○ 한편, 2023년에는 법률을 정비하여 「The Microchipping of Cats and Dogs (England) Regulations 2023」을 통해 반려묘도 등록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2024년 6월 10부터 영국(잉글랜드) 내 반려묘에 대한 등록 의무화가 시행됨.

- 모든 반려묘는 생후 20주가 되기 전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반려묘도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됨.
- 반려묘 역시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미등록 시 £500의 벌금이 부과됨.
- 다만, 농장 고양이와 야생화된 고양이(길고양이)와 같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의존도가 거의 없는 고양이는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3. 독일

○ 독일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하여 미국과 같이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105조 2a에 의하면 “각 주(州)는 지방 소비세 및 지출세에 대해 입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⁵⁷⁾
- 베를린의 경우 「반려견 세금법(Hundesteuergesetz)」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베를린 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려견 보유세(Hundesteuer)를 지방 지출세로서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⁵⁸⁾

57) buzer.de(https://www.buzer.de/105_GG.htm), 검색일: 2025. 8. 28.

58) berlin.de(<https://gesetze.berlin.de/bsbe/document/jlr-HuStGBEpP1>), 검색일: 2025. 8. 28.

- 또한 뮌헨의 경우 반려견 세금 조례(Hundesteuersatzung)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뮌헨시 관할 구역 내에서 한 마리 이상의 개를 소유할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 지출세가 부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⁵⁹⁾
 - 이처럼 독일은 연방이 아닌 지자체에 의해 지방 지출세의 명목으로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나 법을 제정하고 있음.
- 의무 등록대상은 개에 한정되어 있으며,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반려견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만 반려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베를린에서는 지역 내에서 양육되는 모든 개에 대하여 마이크로칩을 통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⁶⁰⁾
- 반려견 입양 이후 또는 베를린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생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생후 4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함.
 - 웹사이트⁶¹⁾를 통해 본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 마리당 €17.5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관할 직원이 등록할 경우 €26.5의 수수료를 부과함.
 - 반려견 보유세는 1마리일 경우 연간 €120를 부과하며, 한 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180를 추가적으로 부과함.⁶²⁾

59) muenchen.de(<https://stadt.muenchen.de/rathaus/stadtrecht/vorschift/985/version4/0.html>), 검색일: 2025. 8. 28.

60) berlin.de(<https://gesetze.berlin.de/bsbe/document/jlr-HuHGBE2016pP4>), 검색일: 2025. 8. 28.

61) berlin.de(<https://www.hunderegister.berlin.de/>), 검색일: 2025. 8. 28.

62) berlin.de(<https://www.berlin.de/sen/finanzen/steuern/informationen-fuer-steuerzaler-/faq-steuern/artikel.8848.php>), 검색일: 2025. 8. 28.

-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베를린 개 보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제33조 제1항에 따른 행정위반(administrative offence) 행위로 간주하여 최대 € 1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⁶³⁾

○ 브레멘에서는 3개월령 이내의 모든 반려견에게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반려견 소유자는 입양 후 즉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함.

- 반려견은 「개 사육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Halten von Hunden)」 제5조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민간업체를 통해 등록되며, 등록 비용은 업체마다 상이함.⁶⁴⁾
- 반려견 보유세는 마리당 연간 € 150가 부과되며,⁶⁵⁾ 이를 위반할 경우, 「개 사육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행정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 5,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함부르크에서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마이크로칩 이식을 통한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⁶⁶⁾

- 웹사이트⁶⁷⁾를 통해 본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 마리당 € 31의 수수료를 부

63) [berlin.de\(<https://gesetze.berlin.de/bsbe/document/jlr-HuHGBE2016pG5>\)](https://gesetze.berlin.de/bsbe/document/jlr-HuHGBE2016pG5), 검색일: 2025. 8. 28.

64) [transparenz.bremen.de\(\[https://www.transparenz.bremen.de/metainformationen/bremisches-gesetz-ueber-das-halten-von-hunden-bremhundeg-vom-24-juni-2025-286470?asl=bremen203_tpgesetz.c.55340.de&template=20_gp_ifg_meta_detail_d\]\(https://www.transparenz.bremen.de/metainformationen/bremisches-gesetz-ueber-das-halten-von-hunden-bremhundeg-vom-24-juni-2025-286470?asl=bremen203_tpgesetz.c.55340.de&template=20_gp_ifg_meta_detail_d\)\)](https://www.transparenz.bremen.de/metainformationen/bremisches-gesetz-ueber-das-halten-von-hunden-bremhundeg-vom-24-juni-2025-286470?asl=bremen203_tpgesetz.c.55340.de&template=20_gp_ifg_meta_detail_d), 검색일: 2025. 8. 28.

65) [transparenz.bremen.de\(\[https://www.transparenz.bremen.de/metainformationen/hundesteuergesetz-in-der-fassung-vom-17-dezember-1984-67725?asl=bremen203_tpgesetz.c.55340.de&template=20_gp_ifg_meta_detail_d\]\(https://www.transparenz.bremen.de/metainformationen/hundesteuergesetz-in-der-fassung-vom-17-dezember-1984-67725?asl=bremen203_tpgesetz.c.55340.de&template=20_gp_ifg_meta_detail_d\)\)](https://www.transparenz.bremen.de/metainformationen/hundesteuergesetz-in-der-fassung-vom-17-dezember-1984-67725?asl=bremen203_tpgesetz.c.55340.de&template=20_gp_ifg_meta_detail_d), 검색일: 2025. 8. 28.

66) [landesrecht-hamburg.de\(<https://www.landesrecht-hamburg.de/bsha/document/jlr-HuGHArahlen>\)](https://www.landesrecht-hamburg.de/bsha/document/jlr-HuGHArahlen), 검색일: 2025. 9. 1.

과하며, 고객센터, 소비자보호원, 무역환경부 등을 통해 등록할 경우 €49의 수수료를 부과함.

- 반려견 보유세는 연간 €90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부르크 개 보유에 관한 법률(Hamburgisches Gesetz über das Halten von Hunden)」 제27조에 따른 행정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5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⁶⁸⁾

4. 일본

○ 일본의 반려동물 등록은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하고 있음.

- 동법 제4조(등록)에 의하면 “개의 소유자는 개를 취득한 날(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취득한 경우, 생후 90일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개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등록된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등록증이 교부되며, 반려견 소유자는 교부된 등록증을 반려견에게 착용시켜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장(벌칙) 제27에 의하면 “개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등록증을 착용시키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⁶⁹⁾

67) hamburg.de(<https://serviceportal.hamburg.de/HamburgGateway/Service/Entry?id=HREG2>), 검색일: 2025. 9. 1.

68) landesrecht-hamburg.de(<https://www.landesrecht-hamburg.de/bsha/document/jlr-HuGHAV6P27>), 검색일: 2025. 9. 1.

69) e-gov(<https://laws.e-gov.go.jp/law/325AC1000000247>), 검색일: 2025. 9. 8.

- 반려견의 등록은 동물관리센터, 보건소, 위탁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반려견 등록 이후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⁷⁰⁾
- 「광견병 예방법」 외 동물등록 관련 규정은 「동물애호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 「동물애호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일본에서 판매되는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됨. 다만, 해당 법안의 규제 대상은 번식업자, 브리더, 팻숍 등 반려동물 판매업자로 한정됨.
 -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4장의 3(개와 고양이 등록)과 제39조의 2(마이크로칩 장착) 제2항에 의해 “개와 고양이 등 판매자 이외 개와 고양이의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 수준의 노력 의무가 부과됨.
 - 이에 따라 이미 양육 중인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한편, 「광견병 예방법」은 지자체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물애호관리법」 제39조의 7(「광견병 예방법」 특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통지 요청을 한 특례 참여 지자체의 경우 마이크로칩 정보등록 일에 「광견병 예방법」 제4조(등록)의 반려견 등록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등록된 마이크로칩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교부된 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⁷¹⁾

70) 지인배 외(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71) e-gov(https://laws.e-gov.go.jp/law/348AC1000000105#Mp-Ch_4_3), 검색일: 2025. 9. 8.

5. 시사점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주요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 국가에서 반려견을 의무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특히 영국은 2024년부터 고양이 등록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함.
 - 비록 반려묘의 경우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함에 따라 반려견보다 생활환경 범위가 좁고 유실 가능성이 낮지만, 우리나라로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복지 개선 측면에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동물등록 방식 일원화와 함께 등록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모두 동물등록 방식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모두 일정 비용을 부과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동물등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내장형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식표 활용 비중도 높은 수준임.

- 또한 최초 동물등록을 마친 후 일정 기간마다 동물등록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변경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등록 이력을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 수 파악 및 최신 정보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의 동물등록 방식 일원화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일정 기간 단위의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셋째,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반려견의 중성화수술 여부, 소유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동물등록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독일은 등록 경로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부과함.
-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이 이루어 졌으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한 동물등록 비용 지원도 이루어 진 사례가 존재함.
- 다만, 이는 일시적인 사업의 형태로서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소유자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혜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및 보유세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반려동물 복지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일부 지역과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정책 추진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로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와 사회적 합의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반려동물 판매단계에서 동물등록 규정에 대한 준수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판매되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됨.
- 비록 판매 이후 소유자의 등록 의무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판매단계에서 동물등록 의무화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로 「동물보호법」을 통해 판매 관련 영업업자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저하된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반려동물 판매단계에서의 동물등록 규정 준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 및 단속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6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방안

1.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의 기본방향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정책이 점차 동물보호 중심에서 동물복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 및 관련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개체 수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정보 변경에 따른 최신 정보가 파악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려동물의 등록률 향상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등록률 향상을 통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추진되어 옴.
- 그러나 지속적인 정부 정책과 더불어 반려견을 중심으로 등록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록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며, 명확한 등록률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결과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반려견의 미등록 이유로 '동물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30.3%)',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23.0%)', '동물등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14.9%)', '동물등록 비용(수수료)이 부담스럽기 때문(14.0%)'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됨.
 - 또한 다수의 소유자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한 실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통해 등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전 과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측면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소유자의 인식 및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의 기본방향을 ①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② 반려동물 등록 정보 관리체계 강화, ③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로 구분하여 제시함.
 -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① 등록대상 및 범위 확

대, ② 등록 절차 간소화 및 변경 신고 실효성 제고, ③ 법적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 향상 및 단속·처벌 강화 등을 제시함.

- 반려동물 등록 정보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① 동물등록 방식 일원화 추진 및 신규 등록방식 검토, ②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 검토, ③ 등록 정보 관리 플랫폼의 활용성 강화, ④ 등록 정보 관리 전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함.
-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① 전국 단위 홍보 및 캠페인 강화, ②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③ 취약계층 대상 등록비용 지원 확대, ④ 등록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함.

2.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2.1.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2.1.1. 등록대상 및 범위 확대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는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이란 반려(反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반려묘에 대한 양육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반려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⁷²⁾

-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동물등록을 통한 개체 수 파악과 함께 등록 정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 단위로 시행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의 의무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에 따른 「동물보호법」 개정도 검토 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 결과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은 89.5%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반려묘 소유자의 찬성 비율 또한 83.8%로 높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일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반려견의 경우 생후 2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생산업 영업장 내 부모견, 특수목적견,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견 등에 대한 등록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반려견에 대한 등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 등록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1.2. 등록 절차 간소화 및 변경 신고 실효성 제고

- 현재 반려동물 등록 절차는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 동물등록 대행기관 → 지자체의 경로를 거쳐 이루어짐.
 - 별도의 시술이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의 경우 주로 동물

72)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국내 반려묘의 개체 수는 2015년 189만 7천 마리에서 2024년 277만 마리로 연평균 4.3% 증가하였으며, 반려견의 개체 수는 2015년 512만 6천 마리에서 2024년 499만 2천 마리로 연평균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이 이루어지지만, 시술이 필요 없는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와 인식표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직접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함.

-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등록 절차 간소화(16.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많은 소유자가 복잡한 등록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소유자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등록률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등록 절차에 대한 디지털화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즉,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민간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간편 등록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등록증 자동 발급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며, 「동물보호법」을 통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규정 준수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실제 변경 신고가 이루어진 비율은 반려견의 경우 6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확한 정보 이력 파악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변경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 수준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변경 신고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2.1.3. 법적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 향상 및 단속·처벌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⁷³⁾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 수준은 88.5%로 높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전체 소유자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대상인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본인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은 17개 항목에 걸쳐 43.6~7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등록 과태료 및 변경 신고 미이행 과태료에 대한 인지 수준은 각각 52.4%와 47.5%로 다른 항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따라서 반려동물 소유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동물등록 관련 규정에 인지 수준을 높임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현재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등록 관련 규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법 규정과 실제 단속 및 처벌 간의 괴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물론,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단속을 통한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73) 농림축산식품부(2025b),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이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등록 관련 규정도 존재하는 만큼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 향상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2.2. 반려동물 등록 정보 관리체계 강화

2.2.1. 동물등록 방식 일원화 추진 및 신규 등록방식 검토

- 반려동물 등록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실 위험이 없고 신뢰성 및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의 일원화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만약 현재와 같이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등 복수의 등록방식이 공존할 경우 등록 장치 분실로 인해 유실·유기동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유실·유기동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등록방식 일원화를 통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⁷⁴⁾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다른 일반적인 논의들에 비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 정책 수립 시 항상 제시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조사 결과 이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의 긍정적인 인식도 존재(찬성 48.3%,

74) 데일리벳(2017. 9. 12.),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주인 쉽게 찾았어요’ 이토록 중요한 동물등록제”.

반대 14.1%)하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방식 일원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일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반려견 소유자의 경우 부작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등록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반려견의 생체인식을 통한 신규 등록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견의 비문을 활용한 등록방식 기술의 안정성 및 정확성이 검증된 만큼 등록률 향상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조사 결과 아직 반려견 비문 등록방식에 대한 소유자들의 인지 수준 (36.5%)이 낮고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36.9%)가 낮다는 점은 신규 등록방식의 도입 검토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

2.2.2. 동물등록 개인정보 도입 검토

○ 동물등록제의 본질적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소유자와 반려동물의 최신 정보가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소유자 및 반려동물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정확한 정보가 다수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해외사례 검토 결과 미국, 영국, 독일은 소유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서

일정 기간마다 동물등록 정보를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를 통해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조사 결과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은 57.9%로 나타났으며, 등물등록 갱신 비용 발생 시에도 높은 찬성 의향(55.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갱신 절차와 적정 수준의 갱신 기간 및 비용, 관련 예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련 주체 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2.3. 등록 정보 관리 플랫폼의 활용성 강화

-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만큼 중요한 사항이 반려동물 등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 정보 변경, 분실신고, 입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시계열적 변화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은 반려동물 등록 정보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 강화를 통한 등록 정보 관리체계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사 결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체 소유자의 인지 수준은 37.2% (반려견 37.7%, 반려묘 3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와 사용자 편의 중심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활용성 강화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2.2.4. 등록 정보 관리 전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반려동물 관련 정보는 매우 다양하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및 반려묘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현재 많은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동물보호·복지 업무와 타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단기적인 인력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등록 정보 관리에 대한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등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누락될 수 있으며, 지역 간 관련 정보의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체계적인 등록 정보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 운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함께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정보 관리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취약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3.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

2.3.1. 전국 단위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소유자의 인지도 향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의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임.
 - 조사 결과 동물등록제에 대한 전체 소유자의 인지 수준은 57.9%에 불과하며, 특히, 반려견 소유자(64.2%)보다 반려묘 소유자(39.2%)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 소유자의 인식 수준도 68.8%(반려견 70.9%, 반려묘 63.9%)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및 등록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 및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전국 단위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단순한 인지도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와 소유자의 의무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2.3.2.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에 대한 의무화가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조사 결과 전체 소유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경험 비율은 1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동물등록을 포함한 많은 사전 지식 없이 충동적인 양육이 다수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조사 결과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통해 동물등록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54.9%)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66.1%)도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상당 부분 형성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동물등록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2026년부터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제시 한 만큼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⁵⁾

2.3.3. 취약계층 대상 등록비용 지원 확대

-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을 조사한 결과 ‘등록 절차 간소화(16.3%)’ 다음으로 ‘등록비용 지원(15.0%)’이 높게 나타나 등록비용에 대한 소유자들의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할 경우 등록비용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⁷⁵⁾ 2026년부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 전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판매업·민간동물보호시설 입양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함.

- 현재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등록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측면이 있으며, 소규모 한정된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등록비용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
 - 실외 사육견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등록비용 지원사업이 확대될 경우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2.3.4. 등록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조사 결과 등록동물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 확대에 대하여 전체 소유자의 52.7%가 찬성(반대 7.4%)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시설 할인, 우선 이용권 제공,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등 등록동물 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함께 건강검진 및 접종비 지원, 동물병원 진료비 감면, 팻보험 혜택 제공 등 등록동물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부 록 1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표



ID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및 식품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 실태 및 등록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반려동물의 등록률 향상 및 복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의 응답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며, 반려동물은 현재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개와 고양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 9.

-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담당 : 김동훈 부연구위원 (061-820-2368 / donghoon@krei.re.kr)
이정민 부연구위원 (061-820-2123 / fantom99@krei.re.kr)

SQ0. 귀하께서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 ① 현재 양육하고 있음 조사 계속 ② 현재 양육하지 않음 조사 중단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만 () 세

SQ3.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⑰ 세종 | |

SQ4. 귀하의 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도시지역(동 지역) ② 농촌지역(읍/면/리 지역)

SQ5.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주상복합 ④ 오피스텔 ⑤ 연립/빌라 ⑥ 기타()

PART A.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등록 실태

A1. 귀하께서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반려견 ② 반려묘 ③ 반려견, 반려묘 모두

A2. 귀하께서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종류별 마릿수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	반려견	반려묘	합계
양육 마릿수	()마리	()마리	()마리

A3.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A2 문항의 양육 중인 모든 반려동물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2) 체급 기준은 반려견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급 기준: 품종 또는 성견 기준 소형견(10kg 미만), 중형견(10~25kg 미만), 대형견(25kg 이상)

* (7) 입양 경로

- | | | |
|--------------------------|---------|----------------------------|
| ① 지인을 통한 직접 입양(친구/친척) | ② 동물병원 | ③ 펫샵(분양샵) |
| ④ 동물보호센터 | ⑤ 인터넷 몰 | ⑥ 온라인 개인 거래(SNS, 온라인 카페 등) |
| ⑦ 가정 내 번식(자가번식) | ⑧ 생산업자 | ⑨ 길거리 구조 |
| ⑩ 기타() | | |

* (11-3) 동물등록 대행기관 유형

- | | | | |
|----------|-------------|----------|------------|
| ① 동물병원 | ② 동물보호단체·법인 | ③ 동물보호센터 | ④ 민간동물보호시설 |
| ⑤ 동물판매업자 | | | |

* (13) 등록방식: 반려묘 동물등록은 내장형만 가능하므로 반려견에 대해서만 응답

- 내장형: 반려동물의 피하(어깨뼈 사이)에 주사기로 마이크로칩 삽입(영구적)
- 외장형: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인식표(목걸이, 펜던트 등) 부착(분실·파손 가능성 존재)

구분	반려 동물 (1)	반려 동물 (2)	반려 동물 (3)	...
(1) 종류	① 반려견 ② 반려묘			
(2) 체급 기준(반려견만 응답)	① 소형견 ② 중형견 ③ 대형견			
(3) 성별	① 수컷 ② 암컷			
(4) 현재 나이	()년 ()개월			
(5) 양육 기간	()년 ()개월			
(6) 중성화수술 여부	① 수술 ② 미수술			
(7) 입양 경로	〈참고〉 ①~⑩ 중 선택			
(8) 입(분)양 당시 구입비	① 있음 / 약 ()만 원 ② 없음			
(9) 월평균 양육비 (사료비, 의료비, 서비스비 등)	약 ()만 원			
(10) 입(분)양 당시 동물등록 현황	① 등록 ② 미등록 ② 미등록 ③(11)로 이동			
(11) 입(분)양 이후 현재 동물등록 현황	① 등록 ②(11-1)~(11-5)로 이동 ② 미등록 ③(12)~(13)으로 이동			
(11-1) 등록 시기	① 입(분)양 이후 약 ()개월 ② 잘 모르겠음			
(11-2) 동물등록 시 대행기관 이용 여부	① 이용 ② 미이용			
(11-3) 대행기관 유형	〈참고〉 ①~⑤ 중 선택			
(11-4) 현재 등록방식(반려견만 응답)	① 내장형 칩 ② 외장형 칩 ③ 인식표			
(11-5) 등록비용(수수료 포함)	① 약 ()만 원 ② 모름			
(12) 향후 등록 의향	① 있음 ② 없음			
(13) 향후 등록방식(반려견만 응답)	① 내장형 칩 ② 외장형 칩			

A4.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A3. (1)-① 및 (11)-② 응답자 : 반려견 소유자 중 현재 미등록 소유자)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 ② 동물등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③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④ 등록 비용(수수료)이 부담스럽기 때문
⑤ 인근에 등록 대행기관이 없기 때문 ⑥ 생후 2개월 미만이기 때문
⑦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거부감 때문 ⑧ 기타()

A5. 반려묘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A3. (1)-② 및 (11)-② 응답자 : 반려묘 소유자 중 현재 미등록 소유자)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 ② 동물등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③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 ④ 등록 비용(수수료)이 부담스럽기 때문
⑤ 인근에 등록 대행기관이 없기 때문 ⑥ 동물등록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
⑦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거부감 때문 ⑧ 기타()

PART B.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관련 인식

B1.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걸쳐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의 무화를 시행 중입니다. 귀하께서는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B2. 귀하께서는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B3. 귀하께서는 「동물등록제」 시행 및 등록률 향상에 따른 각 부문별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낮음			보통	높음		
	1	2	3		4	5	6
(1)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2) 동물 학대 예방							
(3) 유실·유기동물 감소							
(4)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구분	낮음			보통	높음		
	1	2	3		4	5	6
(5) 소유자 책임 의식 제고							
(6) 공공 안전 및 법 집행 지원							
(7) 질병 관리 및 공중 보건 안전망 구축							
(8) 반려동물 통계 기반 구축							
(9)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							
(10)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11) 반려동물에 대한 미소유자의 인식 개선							
(12) 정부 정책 수립 효율성 향상							

B4.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귀하께서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B5. 귀하께서는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B5-1로 이동
 ⑤ 매우 필요 B5-1로 이동

B5-1. 귀하께서는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B6.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통해 습득한 기본 정보는 미포함

- ① 있음 B6-1로 이동 ② 없음

B6-1. 사전교육을 통해 동물등록제 관련 정보 습득 및 동물등록의 필요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B7.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입양 전 교육 의무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B8. 귀하께서는 양육 중인 반려동물을 입양한 이후 현재까지 소유자 본인의 인적 사항 또는 반려동물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 A3. (10)-① 및 (11)-① 응답자 : 입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소유자

- ① 있음 B8-1로 이동 ② 없음

B8-1. 소유자 또는 반려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9. 귀하께서는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을 분실하였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B9-1로 이동 ② 없음

B9-1. 반려동물 분실 이후 다시 찾은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약 ()일

B10. 만약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등록 말소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A3. (10)-① 및 (11)-① 응답자 : 입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소유자

- ① 예 ② 아니오

B11. 유실·유기동물 방지 및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B12. 최근 기존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칩, 외장형 칩) 외에 반려견을 대상으로 비문(코주름)을 이용한 비문 등록방식이 개발되어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비문 등록방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B13.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이용한 비문 등록방식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B14. 만약 반려견을 대상으로 비문 등록방식이 도입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있음 ⑤ 매우 있음

B15. 귀하께서는 등록동물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소유자와 등록동물의 정보를 확인·갱신하는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B15-1~2로 이동
⑤ 매우 찬성 B15-1~2로 이동

B15-1. 동물등록 정보 갱신은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이상

B15-2. 만약 일부 선진국과 같이 정보 갱신을 위해 일정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찬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B16.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B17. 귀하께서는 동물등록이 이루어진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B18.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①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 | ② 등록 절차 간소화 |
| ③ 등록비용 지원 | ④ 등록 의무화에 대한 벌칙 기준 강화 |
| ⑤ 미등록 소유자 단속 강화 | ⑥ 입양 전 교육 의무화 |
| ⑦ 취약지역 및 계층 대상 등록 서비스 확대 | ⑧ 등록동물 대상 의료비 지원 |
| ⑨ 등록동물 전용 이용시설 확대 | ⑩ 등록동물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
| ⑪ 등록동물 대상 펫보험 가입 혜택 | ⑫ 등록동물 대상 관련 서비스 이용료 할인 |
| ⑬ 등록동물 대상 사료·용품비 할인 | ⑭ 등록동물 대상 보호·안전관리서비스 지원 |
| ⑮ 기타() | |

PART C. 「동물보호법」 내 동물등록 규정 관련 인식

C1. 다음에 제시된 「동물보호법」 내 주요 동물등록 관련 규정을 확인하신 후 각 규정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적정 수준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반려견 대상 규정이지만, 반려묘만 양육 중인 소유자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관련 규정[(1), (4), (6), (9)] 항목은 ‘1. 짧음 ~ 4. 적당함 ~ 7. 깊’을 의미함.

※ 금액 관련 규정[(14), (15), (16), (17)] 항목은 ‘1. 낮음 ~ 4. 적당함 ~ 7. 높음’을 의미함.

구분	관련 규정
(1) 반려견 등록 월령	생후 2개월 이상
(2) 동물등록 제외지역	도서 지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부재 지역
(3) 맹견 등록	모든 맹견 동물등록 의무화
(4) 신규 등록 신청 기간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5) 등록동물 분실신고	등록동물 분실신고 의무화
(6) 등록동물 분실신고 기간	분실한 날부터 10일 이내
(7)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 신고 의무화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8)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 신고 의무화 (분실 후 반환, 해외 양육, 동물 사망, 무선식별장치 변경 등)
(9) 등록 변경 신고 기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10) 등록 절차	소유자 → 동물등록 대행기관 → 지자체
(11) 등록방식_내장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가능
(12) 등록방식_외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가능
(13) 등록방식_인식표	현재 일반 인식표 사용 불가
(14) 등록 수수료_내장형	1만 원
(15) 등록 수수료_외장형	3천 원
(16) 미등록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17) 변경 신고 미이행 과태료	50만 원 이하

구분	인지 여부	부적절			보통	적절		
		① 인지	② 미인지	1	2	3	4	5
(1) 반려견 등록 월령								
(2) 동물등록 제외지역								
(3) 맹견 등록								
(4) 신규 등록 신청 기간								

구분	인지 여부 ① 인지 ② 미인지	부적절			보통	적절		
		1	2	3		4	5	6
(5) 등록동물 분실신고								
(6) 등록동물 분실신고 기간								
(7)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8)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신고								
(9) 등록 변경 신고 기간								
(10) 등록 절차								
(11) 등록방식_내장형								
(12) 등록방식_외장형								
(13) 등록방식_인식표								
(14) 등록 수수료_내장형								
(15) 등록 수수료_외장형								
(16) 미등록 과태료								
(17) 변경 신고 미이행 과태료								

C2. 귀하께서는 미등록, 분실 미신고,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C2-1로 이동 ② 없음

C2-1.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미등록 ② 분실 미신고 ③ 소유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④ 등록동물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⑤ 기타()

PART D. 응답자 특성

D1. 귀하께서는 현재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기혼 ② 미혼(동거, 이혼, 사별 포함)

D2. 현재 귀댁의 동거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 포함)

- 본인 포함 총 ()명

D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D4.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200만 원 미만 | ② 200~300만 원 미만 | ③ 300~400만 원 미만 |
| ④ 400~500만 원 미만 | ⑤ 500~600만 원 미만 | ⑥ 600~700만 원 미만 |
| ⑦ 700~800만 원 미만 | ⑧ 800~900만 원 미만 | ⑨ 900~1,000만 원 미만 |
| ⑩ 1,000만 원 이상 | | |

※ 반려동물의 등록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의견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2

미국의 주별 동물등록 관련 요건

〈부표 1〉 미국 주별 동물등록 관련 요건

주	요건	등록비
Alab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거주지증명- 일부 지역: 다년 등록 및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3~\$50
Alas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2~3년 등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50
Ariz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55
Arkans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3년 등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50
Califor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2~3년 등록 및 노인 또는 저소득층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20~\$60
Colora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도우미 동물 수수료 면제- 일부 지역: 노인 수수료 면제, 중성화/불임 수술 된 개에 대해 무료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0~\$30
Connectic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8(중성화/불임 수술 됨)- 연간 \$19(중성화/불임 수술 되지 않음)
Dela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0(중성화/불임 수술 됨)- 연간 \$15(중성화/불임 수술 되지 않음)- 노인 할인제공
Flori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연령 또는 소득증명(할인대상용)-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노인 또는 저소득층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0~\$60

(계속)

주	요건	등록비
Georg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연령 증명(실버 라이센스용) - 일부 지역: 다년 등록 및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40
Hawa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칩 등록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1(중성화/불임 수술 됨) - 연간 \$6.1(중성화/불임 수술 되지 않았거나, 수의사 증명서 없는 경우)
Ida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칩 등록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30
Illino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칩 등록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일부 지역: 다년 등록 및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50
Ind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평생 등록과 노인 할인제공 - 평생 등록: 마이크로칩 필요 * Indianapolis에서는 등록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50
Io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칩 등록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일부 지역: 마이크로칩 등록 개에 대한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40 - 유효기간: 해당연도 1월 1일~12월 31일
Kans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칩 등록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일부 견종: 등록 수수료 증가 - 일부 지역: 3년 등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25
Kentuc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마이크로칩 등록 개에 대한 할인제공, 3년 등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40
Louis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 New Orleans: 초기 신청 수수료 \$95, 연간 20\$~ 간이(온라인 등록의 경우, 5\$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중성화/불임 수술 됨) - 연간 \$20(중성화/불임 수술 되지 않음)
Ma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 일부 견종: 등록 수수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6~\$11(1월 1일~12월 31일)
Mary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노인 할인제공 - 1세 미만 반려동물 수수료 면제(1차 광견병 백신 유효기간 마감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20

(계속)

주	요건	등록비
Massachusetts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 연간 \$10~\$30
Michigan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노인 할인제공	- 연간 \$10~\$25 - 3년 등록: \$25~\$50
Minnesota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다년 또는 평생 등록 제공 - 평생 등록: 마이크로칩 필요	- 연간 \$15~\$280
Mississippi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마이크로칩 할인, 강아지(4개월 미만) 또는 안내견 수수료 면제	- 연간 \$5~\$30
Missouri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일부 지역: 3년 등록 제공	- 연간 \$5~\$50
Montana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일부 지역: 다년 또는 평생 등록 제공, 노인 할인제공	- 연간 \$5~\$30
Nebraska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도우미 동물 수수료 면제 - 일부 건강: 등록 수수료 증가(개인 배상 책임보험 필요)	- 연간 \$5~\$20(1월 1일~12월 31일)
Nevada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일부 지역: 노인 할인제공	- 연간 \$8~\$25
New Hampshir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노인 할인제공	- 연간 \$6.5~\$10(5월 1일~4월 30일)
New Jersey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 연간 \$8~\$25 - 간신 기간: 1월 1일~3월 1일
New Mexico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마이크로칩 증명서 요구, 다년 등록 제공	- 연간 \$5~\$50
New York Stat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노인 할인제공	- 연간 \$7~\$30
New York City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연간 \$8.5(중성화/불임 수술 됨) - 연간 \$34(중성화/불임 수술 되지 않음)

(계속)

주	요건	등록비
North Carol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일부 지역: 다년 등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55
North Dak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20(1월 1일~12월 31일)
Oh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평생 등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8~\$25 - 갱신 기간: 12월 1일~1월 31일
Oklaho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일부 지역: 다년 등록 및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20
Oreg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도우미 동물 수수료 면제, 다년 등록 및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95
Pennsylva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평생 등록: 마이크로칩 필요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 일부 도시: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6.7~\$8.7 - 유효기간: 해당연도 1월 1일~12월 31일 - 평생 등록: \$36.7~\$52.7
Rhode Is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8~\$10 - 유효기간: 해당연도 5월 1일~다음연도 4월 30일
South Carol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50 - 유효기간: 해당연도 1월 1일~12월 31일
South Dak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10 - 유효기간: 입양일로부터 1년
Tenness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8~\$24 - 유효기간: 광견병 백신 접종일로부터 1년
Tex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마이크로칩 등록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마이크로칩 삽입 개 등록 면제, 평생 등록 및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6~\$50 - 3~5년 등록: \$50~\$150
Ut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평생 등록 및 노인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40
Verm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9~\$58 - 유효기간: 해당연도 5월 1일~다음연도 4월 30일

(계속)

주	요건	등록비
Virgi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 일부 견종: 등록 수수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 - 평생 \$50
Washingt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평생 등록 및 노인 할인제공 - 일부 견종: 등록 수수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50
West Virgi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6 - 유효기간: 해당연도 7월 1일~다음연도 6월 30일
Wiscons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35 - 유효기간: 해당연도 1월 1일~12월 31일
Wyo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및 디스테퍼 백신 접종 증명서 - 일부 지역: 중성화/불임 수술 시 할인제공, 다년 또는 평생 등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25
Washington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견병 및 디스테퍼 백신 접종 증명서 - 중성화/불임 수술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도우미 동물 수수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5~\$50

자료: THE DOG PEOPLE(<https://www.rover.com/blog/dog-license/#:~:text>All%2050%20states%20require%20annual,citizens%20and%20low%2Dincome%20residents>), 검색일: 2025. 8. 4.

참고문헌

- 강원국·김지영·남유진·이서하·임다정·정다경·정아름·김다슬·권혜영·이형석·김옥진
(2016), “반려동물등록제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5(1): 43-49,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 권용수(2021),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법조, 70(1): 255-
281, 사단법인 법조협회.
- 김동훈·홍재호(2025),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 소유자의 양육 및 복지 인식에 미치는
효과 분석”, 식품유통연구, 42(1): 1-24, 한국식품유통학회.
- 김동훈·홍재호·정민국(2025),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농업경
영·정책연구, 52(2): 293-317,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농림축산식품부(2007),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
_____ (2014),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
_____ (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_____ (2020),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_____ (2022), 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_____ (2025a),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_____ (2025b),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_____ (2025c),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_____ (각 연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_____ (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2023), 2022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_____ (2024),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_____ (2025),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
- 오기욱·안동진·소문섭·최승범·이효원·홍선화·이현아·정세희·김옥진(2014), “동물등록제
에 관한 반려견 보호자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3(1):
21-30,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 이동수·박구만(2022), “새로운 반려견 등록방식 도입을 위한 안면 인식 성능 개선 연구”,
방송공학회 논문지, 27(5): 794-807,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 이진홍(2025), “반려동물의 등록 기준 관할(주소지, 거소지, 사육장소)에 관한 연구”, 법
이론실무연구, 13(1): 251-269,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정민국·김동훈(2024),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개선과제, R2014-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R8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아라·구혜경(2020), “반려동물 양육 소비자의 동물등록제 인식에 관한 연구: 소형견 양육자의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7): 392-403, 한국콘텐츠학회.
- 한아람·송근호(2020),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취득 경로에 따른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인문사회 21, 11(1): 507-520.
- 홍재호·김동훈(202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반려동물 관련 이슈 변화 연구”, 농촌경제, 48(2): 39-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온라인 자료〉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동물등록제도 안내, 검색일: 2025. 6. 10.
_____ (<https://www.animal.go.kr>),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일: 2025. 7. 30.
- 국립축산과학원(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28718), 검색일: 2025. 9. 10.
- 규제샌드박스(<https://www.sandbox.go.kr>), 검색일: 2025. 7. 9.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검색일: 2025. 6. 30.
- 미국 의회 공식 입법 정보 사이트(<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7179>), 검색일: 2025. 8. 4.
- 안양시 동물보호복지플랫폼(<https://www.anyang.go.kr/animal/selectBbsNttView.do?key=4931&bbsNo=2077&nttNo=404390>), 검색일: 2025. 7. 9.
- 창원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검색일: 2025. 6. 30.
-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검색일: 2025. 7. 15.
- American Legal Publishing(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boston/latest/boston_ma/0-0-0-14324), 검색일: 2025. 8. 12.
_____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los_angeles/latest/lamc/0-0-0-136628), 검색일: 2025. 8. 7.
_____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newyorkcity/latest/NYCadmin/0-0-0-29356>), 검색일: 2025. 8. 7.
_____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newyorkcity/latest/NYCrules/0-0-0-136887>), 검색일: 2025. 8. 7.

- _____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san_francisco/latest/sf_health/0-0-0-236), 검색일: 2025. 8. 7.
- ANIMAL CONTROL SERVICES(<https://www.vacs.ca/dog-licencing/history-dog-licensing?>), 검색일: 2025. 8. 4.
-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https://www.animallaw.info/article/detailed-discussion-state-cat-laws>), 검색일: 2025. 8. 4.
- berlin.de(<https://gesetze.berlin.de/bsbe/document/jlr-HuHGBE2016pG5>), 검색일: 2025. 8. 28.
- _____ (<https://gesetze.berlin.de/bsbe/document/jlr-HuHGBE2016pP4>), 검색일: 2025. 8. 28.
- _____ (<https://gesetze.berlin.de/bsbe/document/jlr-HuStGBEpP1>), 검색일: 2025. 8. 28.
- _____ (<https://www.berlin.de/sen/finanzen/steuern/informationen-fuer-steuerzaler-/faq-steuern/artikel.8848.php>), 검색일: 2025. 8. 28.
- _____ (<https://www.hunderegister.berlin.de/>), 검색일: 2025. 8. 28.
- _____ (https://www.buzer.de/105_GG.htm), 검색일: 2025. 8. 28.
- City of Boston(<https://www.boston.gov/departments/animal-care-and-control/how-license-your-dog>), 검색일: 2025. 8. 12.
- _____ (<https://www.boston.gov/departments/animal-care-and-control/rules-and-regulations-owning-pet>), 검색일: 2025. 8. 12.
- e-gov(<https://laws.e-gov.go.jp/law/325AC1000000247>), 검색일: 2025. 9. 8.
- _____ (https://laws.e-gov.go.jp/law/348AC1000000105#Mp-Ch_4_3), 검색일: 2025. 9. 8.
- hamburg.de(<https://serviceportal.hamburg.de/HamburgGateway/Service/Entry?id=HREG2>), 검색일: 2025. 9. 1.
- HoustonPaws(<https://www.houstonpaws.com/houston-pet-license-info>), 검색일: 2025. 8. 12.
- landesrecht-hamburg.de(<https://www.landesrecht-hamburg.de/bsha/document/jlr-HuGHArhmen>), 검색일: 2025. 9. 1.
- _____ (<https://www.landesrecht-hamburg.de/bsha/document/jlr-HuGHAV6P27>), 검색일: 2025. 9. 1.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ksi/2023/468/body/made>), 검색일: 2025. 8. 20.

Massachusetts General Law(<https://law.justia.com/codes/massachusetts/part-i/title-xx/chapter-140/section-137/>), 검색일: 2025. 8. 12.

muenchen.de(<https://stadt.muenchen.de/rathaus/stadtrecht/vorschrift/985/version4/0.html>), 검색일: 2025. 8. 28.

municode(https://library.municode.com/tx/houston/codes/code_of_ordinances?nodeId=COOR_CH1GEPR_S1-6GEPECOVILIREET), 검색일: 2025. 8. 12.

_____ (https://library.municode.com/tx/houston/codes/code_of_ordinances?nodeId=COOR_CH6ANFO), 검색일: 2025. 8. 7.

NYC DEPARTMENT OF RECORDS & INFORMATION SERVICES(<https://archives.nyc/blog/2022/5/27/dog-licenses-in-the-old-town-records>), 검색일: 2025. 8. 4.

NYC(<https://www.nyc.gov/site/doh/services/dog-licenses.page>), 검색일: 2025. 8. 7.

St. Louis Park Historical Society(<https://slphistory.org/dogs/>), 검색일: 2025. 8. 4.

THE DOG PEOPLE(<https://www.rover.com/blog/dog-license/#:~:text>All%2050%20states%20require%20annual,citizens%20and%20low%2Dincome%20residents>), 검색일: 2025. 8. 4.

transparenz.bremen.de(https://www.transparenz.bremen.de/metainformationen/bremisches-gesetz-ueber-das-halten-von-hunden-bremhundeg-vom-24-juni-2025-286470?asl=bremen203_tpgesetz.c.55340.de&template=20_gp_ifg_meta_detail_d), 검색일: 2025. 8. 28.

_____ (https://www.transparenz.bremen.de/metainformationen/hundesteuer-gesetz-in-der-fassung-vom-17-dezember-1984-67725?asl=bremen203_tpgesetz.c.55340.de&template=20_gp_ifg_meta_detail_d), 검색일: 2025. 8. 28.

〈보도자료 및 기사〉

강원도민일보(2024. 10. 28.), “춘천시 ‘반려동물 비문등록 서비스’ 외면 왜?”.

경남도민일보(2024. 4. 22.), “창원시 반려동물 등록 칩 아닌 ‘코무늬’로 시범사업”.

경남일보(2023. 12. 28.), “창원시, 전국 최초 반려견 비문등록 ‘창원퍼피앱’ 출시”.

농림축산식품부(2020. 8. 21.), “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2025. 4. 29.),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뉴스펫(2023. 3. 29.), “비문인식 동물등록, 본궤도 올랐다... 화성시, 시범운영 돌입”.

대한투데이(2025. 4. 11.), “고양특례시, 반려동물 비문등록 활성화로 유실견 예방 나선다”.
뉴스펫(2025. 5. 5.), “美 가구 50%, 반려견·반려묘 키운다”.
데일리벳(2017. 9. 12.),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주인 쉽게 찾았어요’ 이토록 중요한 동물등록제”.
포인트경제(2022. 1. 18.), “[초점] 개의 코를 주목하다”.

〈법령 자료〉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시행 2025. 4. 2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5호, 2021. 1. 27., 일부개정).
동물보호법(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5. 11.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8. 7.,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5. 11.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8. 7.,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 12. 3.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 12. 3.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별표 1], [별표 4].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24. 8. 7. 광주광역시조례 제6426호, 2024. 8.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시행 2025.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812호, 2025. 9. 29.,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시행 2024. 4. 5.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01579호, 2024. 4. 5., 전부개정).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3. 12. 2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43호, 2023. 12. 29., 전부개정).

KREI

www.krei.re.kr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